

# 2015년도 자활지원정책 설명회

## - 자활사업 종사자 대상 -

2015. 1. 27 ~ 1. 28



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

# Contents



## ○ 설명회 개요

### ○ 첫째날 (1.27)

|                                  |    |
|----------------------------------|----|
| 1. 2015년 자활지원정책 방향 .....         | 1  |
| 2. 2015년 자활사업안내 주요개정 내용 .....    | 17 |
| 3. 근로능력평가, 자활기업 .....            | 29 |
| 4. 자산형성지원사업 .....                | 53 |
| 5. 자활인프라 운영 · 관리 .....           | 65 |
| 6.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 | 79 |

### ○ 둘째날 (1.28)

|                        |    |
|------------------------|----|
| 1. 자활사례관리 실태조사 .....   | 89 |
| 2. 자활사례관리 활성화 제언 ..... | 93 |

|                     |     |
|---------------------|-----|
| ○ 부록 : 참석자 명단 ..... | 105 |
|---------------------|-----|



# 설 명 회 개 요



## **1** 설명회 개요

○ (기 간) 2015. 1. 27(화) ~ 1. 28(수) / 1박 2일

○ (장 소) 리솜스파캐슬(덕산)

\* (소재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3로 45-7  
T. 041-330-8000

○ (참석대상) 300명

- 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 지역자활센터 실장
- 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2** 주요 내용

○ 2015년 자활사업 추진 방향 공유

○ 2015년 자활사업안내 주요 개정내용 설명

○ 주요 사업 안내 설명

-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선정 관리 및 자활근로
- 자산형성지원사업
- 자활인프라 운영 및 관리
-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 자활사례관리 실태조사, 활성화 제언



### 3 세부 일정

| 날짜            | 시 간           | 내 용                                       | 비 고                  |
|---------------|---------------|-------------------------------------------|----------------------|
| 첫째날<br>(1.27) | 13:00 ~ 14:00 | ○ 설명회 개최장소 도착 및 접수                        |                      |
|               | 14:00 ~ 14:10 | ○ 개회식(개회사)                                | 중앙자활센터원장<br>자립지원과장   |
|               | 14:10 ~ 14:40 | ○ '15년 자활지원정책방향 설명                        | 임혜성 과장               |
|               | 14:40 ~ 15:10 | ○ '15년 자활사업안내 주요개정 내용<br>- 대상자 관리, 자활근로 등 | 정연희 사무관              |
|               | 15:10 ~ 15:40 | ○ 근로능력평가, 자활기업                            | 정수천 사무관              |
|               | 15:40 ~ 16:00 | ○ 휴 식                                     |                      |
|               | 16:00 ~ 16:30 | ○ 자산형성지원                                  | 김은영 사무관              |
|               | 16:30 ~ 17:00 | ○ 자활인프라 운영·관리                             | 이승묵 사무관              |
|               | 17:00 ~ 17:30 | ○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br>시범사업 추진 경과        | 정찬희 차장<br>(중앙자활센터)   |
|               | 17:30 ~ 18:00 | ○ 질의 응답                                   |                      |
|               | 18:00 ~       | ○ 석 식                                     |                      |
| 둘째날<br>(1.28) | 07:30 ~ 09:00 | ○ 조 식                                     |                      |
|               | 09:00 ~ 10:00 | ○ 자활사례관리 실태조사                             | 김경휘 교수<br>(예수대학교)    |
|               | 10:00 ~ 11:00 | ○ 자활사례관리 활성화 제언                           | 황미영 교수<br>(부산가톨릭대학교) |
|               | 11:00 ~ 11:30 | ○ 질의 응답                                   |                      |
|               | 11:30 ~       | ○ 정리 및 귀가                                 |                      |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첫째날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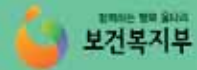
## 1. 2015년 자활지원정책 방향



# 2015년도 자활지원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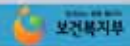
2015.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장 임 해 성



## CONTENTS

### 2015년도 자활지원정책 방향



## I. 자활정책배경

1. 정책환경 / 2. 주요현황 / 3. 주요성과 / 4. 문제점

## II. 2015년 자활정책 추진방향

## III. 2015년 주요 추진과제

1. 고용-복지 연계를 위한 체계적 협업체계 구축
2. 대상자 및 정책변화에 따른 자활사업 개편
3. 자활사업 개편을 위한 기반 강화



## I. 자활정책배경

1. 정책환경
2. 주요현황
3. 주요성과
4. 문제점



## 1. 정책 환경

### 고용-복지 연계의 필요성 증대

- ◎ 사회양극화, 실업 등 근로빈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고용 연계 필요성 증대
- ◎ 고용-복지 연계는 현 정부의 핵심 아젠다



#### 대통령님 말씀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구현될 때 진정한 복지가 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될 것.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잘돼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고  
중산층 70%, 고용률 70% 달성도 가능합니다."

-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업무보고, '13.1.28 -

## 1. 정책 환경

### 고용중심의 고용·복지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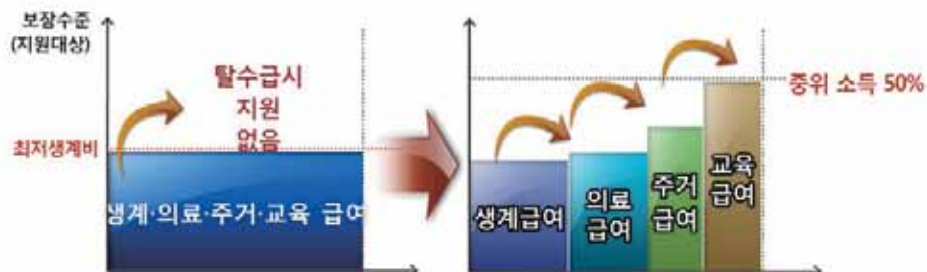
- ④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사업', '희망리본사업의 고용부 이관', '고용센터 중심의 고용복지+센터 추진 등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복지 연계 정책의 상당수가 고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

5

## 1. 정책 환경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④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수급자의 탈수급 유인 효과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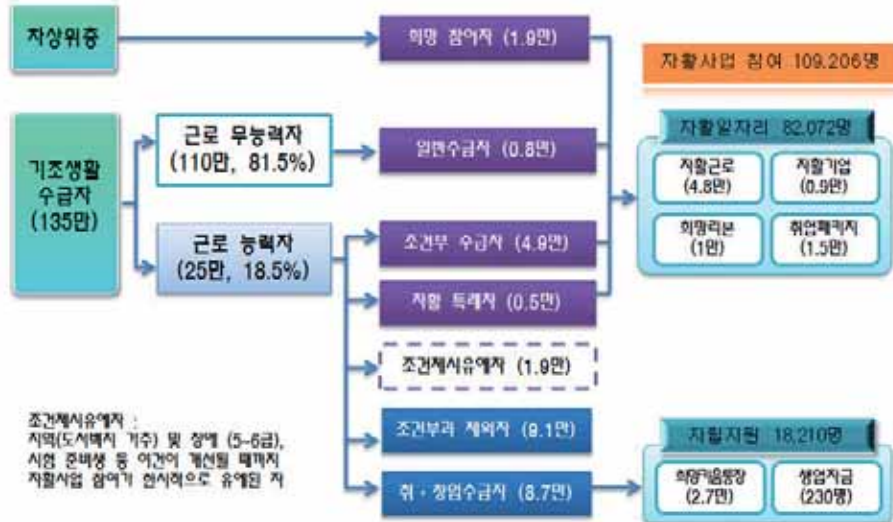


- ④ 자활 주요 정책대상이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6

## 2. 주요현황

### 자활사업 참여 현황 (2013년말 기준)



7

## 2. 주요현황

### 자활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4년          | 2015년          | 증감              | %            | 주요양세                                                                  |
|---------------------------|----------------|----------------|-----------------|--------------|-----------------------------------------------------------------------|
| <b>계</b>                  | <b>549,428</b> | <b>448,075</b> | <b>△101,353</b> | <b>△18.4</b> | <b>운영비, 인건비 등 단가 3% 인상</b>                                            |
| 자활사업                      | 412,444        | 316,154        | △96,290         | △23.3        | -                                                                     |
| -자활근로                     | 382,798        | 314,803        | △67,995         | △17.7        | 15년 50천원 수준 지원 예정                                                     |
| -자활사례관리                   | 1,020          | 1,051          | 31              | 3.0          | 60개소                                                                  |
| -성과중심자활사업(희망리본사업)         | 27,686         | -              | -               | -            | 고충노동부로 이관                                                             |
| -자활통계시스템 신진화              | 300            | 300            | -               | -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편                                                        |
| -맞춤형 고충복지연계               | 640            | -              | -               | -            | 고충센터 중심형으로 추진                                                         |
|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 52,865         | 50,276         | △2,589          | △4.9         | 중앙 : 사업비(SW개발비) 212백만원(신규)<br>지역 : 청소년자활프로그램28→27개소<br>연수원 : 2,222백만원 |
| 자활사업관리                    | 190            | 177            | △13             | △6.8         | -                                                                     |
| 생업자금 이차보전 및 손실보전금         | 1,160          | 768            | △392            | △33.8        | 손실보전금: 7% 반영 / 이차보전료: 0.2% 반영                                         |
| 자활장려금                     | 25,000         | 15,000         | △10,000         | △40.0        | EITC와 자활장려금 연계조정                                                      |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 | 48,295         | 55,556         | 7,261           | 15.0         | 희망키움통장 I: 신규 3천 가구<br>희망키움통장 II: 신규 20천 가구                            |
|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운영            | 9,474          | 10,144         | 670             | 7.1          | 인건비 : 10.4%증                                                          |

8

### 3. 주요성과

#### 자활성공률 및 탈수급률 향상

- ◎ 자활사업 수혜자 확대, 대상별 프로그램 다양화(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희망키움통장 등), 인프라 확충 등으로 자활성공률 및 탈수급률 지속적 향상



9

### 3. 주요성과

#### 자활프로그램 다양화

- ◎ 성과중심 자활사업: 희망리본 사업 도입 • 확대(2009년~)
  - '09) 2천명 → '10) 3.2천명 → '11~'12) 4천명 → '13) 1만명 → '14) 12천명
- ◎ 취업성공패키지 도입 • 확대(2009년~)
  - '09) 2천명 → '10) 2.5천명 → '11) 7천명 → '12) 9천명 → '13) 15천명
- ◎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도입 • 확대
  - '10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I 도입:
    - '10) 10천 → '11) 15천 → '12) 18천 → '13) 27천 → '14) 32천가구(누적)
  - '13년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 도입: '13) 5천 → '14) 7천명(누적)
  - '14년 일하는 차상위계층 대상 희망키움통장 II 도입: '14) 10천가구(누적)

10

### 3. 주요성과

#### 자활인프라 확충

##### ◎ 자활연수원 완공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중앙자활센터 컨소시엄 구성하여 '15년 3월부터 운영 예정

##### ◎ 광역자활센터 확대

- ('07) 3개 → ('08) 6개 → ('09) 7개 → ('13) 10개 → ('14) 14개

11

### 4. 문제점

####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는 위기

##### ◎ 지역자활센터에 배치되는 조건부 수급자 수 감소\*, 근로능력 미약자 비율 증가 예상

\*조건부과 대상자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한정,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 등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자활근로 의무 참여자 감소

##### ◎ 자활사업 대상계층이 중위소득 50%로 확대되면서 수요자의 욕구는 다양화, 지역자활센터에 배치되는 조건부 수급자 수 감소, 근로능력 미약자 비율 증가 예상

##### ◎ 자활근로 사업의 경직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개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어려움

※ 1일 8시간 근로 기준, 5대 표준화사업 중심의 한정된 자활사업단 등

12

## 4. 문제점

### 근로빈곤층에 대한 총괄 지원체계 부재

- ◎ 각 부처별로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총괄·조정 역할 부재
- ◎ 고용 중심의 취업우선지원 정책을 포함하는 근로빈곤층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필요

13

CONTENTS

2015년도 자활지원정책 방향



## II. 2015년 자활정책 추진방향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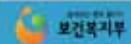
## 2015년 자활정책 추진방향



15

### CONTENTS

## 2015년도 자활지원정책 방향



### III. 2015년 주요 추진과제

1. 고용-복지 연계를 위한 체계적 협업체계 구축
2. 대상자 및 정책변화에 따른 자활사업 개편
3. 자활사업 개편을 위한 기반 강화



16

## 1. 고용-복지 연계를 위한 체계적 협업체계 구축

### 1-1. 고용복지+ 센터 내실화

#### 고용-복지 연계를 위한 체계적 협업체계 구축

##### ◎ 고용-복지 정보연계 강화

- 복지부-고용부 간 상호교류 정보를 확대\*하고, 행복e음(복지부)-고용복지+ 센터 내부 업무망-워크넷(고용부) 간 전산망 연계 추진

17

## 1. 고용-복지 연계를 위한 체계적 협업체계 구축

##### ◎ 고용-복지 정보연계 강화

- 읍면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등과의 연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 \*읍면동을 방문하는 복지대상자 중 고용지원 필요한 대상자 적극 발굴하여 고용복지+ 센터 의뢰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와 고용복지+ 센터 간 협업 강화
- 정기적인 복지분야 간담회를 통해 연계 우수사례 및 노하우 공유

18

## 1. 고용·복지 연계를 위한 체계적 협업체계 구축

### 1-2. 희망리본사업 이관 관련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내실화

- 희망리본사업의 고용부 이관에 따라 당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던 취성패에 대한 복지·사회서비스 연계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재설계를 위한 ‘(가칭)고용·복지 연계 TF’ 구성·운영(고용부 주관) 및 복지부 적극 참여

19

## 2. 대상자 및 정책변화에 따른 자활사업 개편

### 2-1. 근로빈곤층 대상 종합 사례관리체계 구축

- 고용(취업지원 및 취업연계, 직업훈련 등) 뿐만 아니라 복지(복지급여, 사회서비스 연계), 금융(창업지원, 자산형성지원, 신용회복 지원 등) 서비스 등 자활을 위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지역자활센터는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만이 아니라 종합적 사례관리 실시할 수 있는 사례관리 기관으로 기능전환 및 육성

20

## 2. 대상자 및 정책변화에 따른 자활사업 개편

### <통합 사례관리 모형(안)>



21

## 2. 대상자 및 정책변화에 따른 자활사업 개편

### 2-2.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 ㉠ 근로인센티브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 확대

- 기존 차상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II)은 수급빈곤층 진입 예방하는 방향으로 역할 및 기능 조정
- \*희망키움통장 I 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II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중위 50% 이하 빈곤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적용에 따른 자활장려금 조정과 연계한 내일키움통장 확대 방안 검토('16년~)

#### ㉡ 사회적협동조합전환 지원

- 지역자활센터의 여건에 따라 일부 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22

## 2. 대상자 및 정책변화에 따른 자활사업 개편

### 2-2.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 ㉔ 자활기업 지원 강화

-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일반 시장 진입이 어려운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 강화

#### ㉕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금융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신용관리대상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용(자활근로), 복지(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금융(자산형성지원 및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  
⇒ 신용관리대상자가 부채 상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법무부, 법무보호복지공단 등과 협업하여 출소자 및 사회봉사명령 이수자의 자활 프로그램과 자활근로 연계 방안 검토

23

## 2. 대상자 및 정책변화에 따른 자활사업 개편

### 2-3. 자활인프라 육성 및 개방화

#### ㉔ 기존인프라 육성

-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종합 사례관리 기관 및 사회적 경제 진출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육성
  - \* 광역 및 중앙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강화

#### ㉕ 인프라 개방화

- 지역자활센터 외 자활기업,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인프라 개방하여 자활프로그램 실시
  - \* 지역자활센터의 통합적인 사례관리 하에 참여자들이 자활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서 인턴형태로 일자리 경험 가능하도록 인프라 개방

24

### 3. 자활사업 개편을 위한 기반 강화

#### 자활연수원 기능 정립

- 15.3월 개원예정인 자활연수원 교육과정을 활용, 지역자활센터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



25

### 3. 자활사업 개편을 위한 기반 강화

#### 근로빈곤층 대상 실태조사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자 등 주요 근로빈곤층 대상 사업의 이력 분석 등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현황·특성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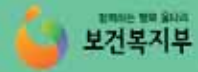
#### 자활정보시스템 체계화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자활기업 등록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등 자활관련 시스템을 개편, 연계 강화하여 신뢰성 있는 통계 기반 구축

26

2015년도  
자활지원정책 방향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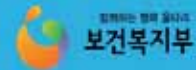
## 2. 2015년 자활사업안내 주요개정 내용



# 2015년도 자활사업안내 주요 개정내용

2015.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정연희



## 1. 2015년 자활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4년          | 2015년          | 증감              | %            | 주요 명세                                                           |
|-----------------------------|----------------|----------------|-----------------|--------------|-----------------------------------------------------------------|
| <b>계</b>                    | <b>549,428</b> | <b>448,075</b> | <b>△101,353</b> | <b>△18.4</b> | 운영비, 인건비 등 단가 3% 인상                                             |
| 자활사업                        | 412,444        | 316,154        | △96,290         | △23.3        | -                                                               |
| -자활근로                       | 382,798        | 314,803        | △67,995         | △17.7        | 15년 50천명 수준 지원 예정                                               |
| -자활사례관리                     | 1,020          | 1,051          | 31              | 3.0          | 60개소                                                            |
| -성과중심자활사업<br>(희망리본사업)       | 27,686         | -              | -               | -            | 고용노동부로 이관                                                       |
| -자활통계시스템 선진화                | 300            | 300            | -               | -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편                                                  |
| -맞춤형 고용복지연계                 | 640            | -              | -               | -            | 고용센터 중심형으로 추진                                                   |
|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 52,865         | 50,276         | △2,589          | △4.9         | 중앙:사업비(GW)대비 212백만원(신규)<br>지역:정소년자활프로그램 28→27개소<br>연수원:2,222백만원 |
| 자활사업관리                      | 190            | 177            | △13             | △6.8         |                                                                 |
| 생업자금 이자보전 및<br>손실보전금        | 1,160          | 768            | △392            | △33.8        | 손실보전금: 7% 반영<br>이자보전료: 0.2% 반영                                  |
| 자활장려금                       | 25,000         | 15,000         | △10,000         | △40.0        | EITC와 자활장려금 연계조정                                                |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br>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 | 40,295         | 55,556         | 7,261           | 15.0         | 희망키움통장 I:신규 8천 가구<br>희망키움통장 II:신규 20천 가구                        |
| 근로능력심사및평가운영                 | 9,474          | 10,144         | 670             | 7.1          | 인건비: 10.4%증                                                     |

## 2. 자활사업 참여 자격 명확화

### 만 65세 이상 자활참여 가능 명시

- ⊙ (문제점) 현 지침상으로도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자활사업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특정 지자체에서 지침의 문구를 오해하여 자활사업 참여자가 65세가 되면 일괄적으로 참여종료시키는 사례 발생

\* (개정 내용) 지침 상 65세 이상 참여가 가능함을 명시하여 연령초과를 이유로 자활사업참여 종료하는 일이 없도록 함

3

## 3. 근로능력 판정 관련 기준 개선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및 장애등록심사 자료 활용

- ⊙ (문제점) 자료보완에 따른 수급자의 추가비용 발생

\* '13년도 근로능력판정 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연금 및 장애등록심사 자료 보유자는 18천명이며, 이 중 10천명이 추가보완자료 요구로 추가 비용(건당 10,780원) 지불

※ (개정 내용) 근로능력판정 신청자중 장애연금 및 장애등록심사 자료를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활용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 (기대효과) 자료보완으로 인한 수급자의 추가 비용(1억원) 절감

4

## 4. 조건부과제외 및 조건제시유예 기준 개선

### 조건부과제외 기준 중 “대학생”에 대한 요건 강화

- (문제점) 실제 휴학중이거나, 장기간 미졸업상태인 경우에도 대학생임을 이유로 조건부과제외되는 경우 발생

\* (개정 내용) “대학생”임을 사유로 조건부과제외 받는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 이 경우,  
재학증명서 외에 학점수강내역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하도록 명시

※ 시험준비를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현 지침 상 조건제시유예로 해결 가능

5

## 5. 조건부과제외 및 조건제시유예 기준 개선

### 양육으로 인한 조건부과제외에 대한 지침 명확화 및 요건 추가

- (문제점) 양육으로 인한 조건부과제외 시,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조건부과제외 불가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규정 없음

\* (개정 내용)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을 “65세 미만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으로 해석지침 규정

- (문제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조건부과제외 불가하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장시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건부과제외 가능

\* (개정 내용) 조건부과제외 사유로 “하루 8시간 이상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 추가

6

## 6. 자활근로사업 개선

### 양육으로 인한 조건부과제외에 대한 지침 명확화 및 요건 추가

#### ☉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

– 자활근로 유형별 급여단가를 '14년 대비 3.3% 인상

(단위 : 원/일)

| 구분            | 2014년  | 2015년  | 증감액(률) | 비고     |
|---------------|--------|--------|--------|--------|
| 시장전입형         | 32,700 | 33,770 | 3.3%   | 1일 8시간 |
| 인턴·도우미형       | 32,700 | 33,770 | 3.3%   | 1일 8시간 |
| 사회서비스<br>일자리형 | 29,300 | 30,270 | 3.3%   | 1일 8시간 |
| 근로유지형         | 21,080 | 21,800 | 3.3%   | 1일 5시간 |

7

## 7. 자활근로사업 개선

### Gateway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관리자 배치 기준 완화 및 업무 명확화

#### ☉ (기존) Gateway 전담관리자 퇴직 시, 현재 자활근로 참여자 70명, Gateway 참여자 15명 기준 충족 하는 경우 신규채용 가능

(개정 내용) 기존 Gateway 전담관리자 퇴직 시, 현재 자활근로 참여자 70명, “퇴직 전 3개월 간 Gateway 실 참여자 15명” 기준 충족 시 신규 채용

- Gateway 전담관리자는 Gateway를 비롯하여 사업단 배치 이후에도 참여자 상담, 교육지원, 근로의욕고취, 각종 서비스연계 등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 하며, Gateway 및 사례관리와 관련 없는 행정지원 등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음
- Gateway 담당자는 Gateway 과정에 참여했던 대상자가 사업단에 배치 되거나 취창업한 이후에도 최소 1년간 지속적으로 상담 관리 하여야 함

8

## 8. 자활근로사업 개선

### Gateway 참여자는 주월차수당 및 자활장려금 제외 명확화

- ㉔ (문제점) Gateway는 교육 및 상담, IAP, ISP 수립을 위한 기간으로 실제 근로활동을 하는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본 과정에 있는 참여자에게 자활장려금 지급하는 사례 발생

(개정 내용) 지침 상 Gateway 참여자는 주월차수당 및 자활장려금 제외됨을 명확화

### 시범(pilot)사업단이 정식사업단이 되는 경우 매출액 승계 규정 명확화

### 공익형 자활근로\*사업 참여 제한기간을 1+1→2+1로 완화

- ㉔ 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 및 농촌형 지역자활센터의 정부양곡 배송

9

## 9. 재무회계규칙 규정 준수 및 매출 관리 개선

- 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정정

- ㉔ 매출 관련 자활사업 세입·세출 규정을 재무회계규칙 및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상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

10

## 10. 자활기업지원 강화

### 자활기업정보 등록시스템 운영으로 자활기업의 현황 및 실태 관리

- ㉔ (기존) 지역자활센터는 사업현황을 보장기관에 반기별 수기 보고  
(개정 내용)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는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분기별 등록

###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컨설팅 지원

- ㉔ (기존) 일부 자활기업이 창업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맞춤형 컨설팅을 자부담(최대 10만원)으로 제공 받고 있음  
(개정 내용)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또는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창업 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11

## 11. 자활기업지원 강화

###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

- ㉔ (문제점) 자활기금 사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자활기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 미흡  
(개정 내용) 자활기금을 통한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금액 총액(최대 5천만원)지정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기대

###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설립 후 최대 3년간) 지원

- ㉔ 자활기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 인건비를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원활한 정착유도
- ㉔ 자활기업당 월 200만원 한도 지원

12

## 12. 지역자활센터 운영 개선 등

### 시간외·휴일수당 규정 근로기준법 적용

#### ㉔ (기존) 시간외·휴일수당의 공무원수당 규정\* 준용

-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1일 4시간이상은 초과할 수 없음
- ※ (개정 내용) 근로기준법 및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준용

###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협회비 명시

#### ㉔ (문제점) 협회비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항이 없어 협회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우며, 지부회비 등 추가적인 회비 과다 납부

- \* (개정 내용) 협회비(중앙회비) 납부 근거 마련, 지부 및 청소년 자활프로그램 등 기타 회비에 대한 근거는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기타 회비 징수는 차단 (단, 추후 공문을 통해 '15년 한 해 동안 유예 예정)

13

## 13. 지역자활센터 운영 개선 등

### 지역(광역)자활센터 지정취소 기준 추가

#### ㉔ “보조금 횡령 등 자활사업에 심각한 훼손을 준 경우” 포함

###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성과평가 제외

#### ㉔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시범사업 운영 준비를 위해 공모 연도의 성과평가 제외 및 전년도 결과 적용

14

## 14. 자산형성지원사업 내실화 추진

###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Ⅱ 제도 안정화

- ④ **근로사업소득 기준 관련 공적소득 증빙 완화**  
소득피약 현실을 감안하여 당초에 미신고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침 상 「고용·임금 확인서(서식 16호)」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소득으로 반영
- ④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대상 확인조사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
- ④ **희망키움통장Ⅱ 수행기관 관리인력 확대, 특별 심화 사례관리 실시를 통해 사례관리 내실화**
- ④ **가입자 대상 교육 내실화를 위한 집합 교육 외에 동영상 교육과정 마련**  
다만,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서 가입기간(3년) 중 6회(연 2회) 중 3회(연 1회) 이상은 집합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함

15

## 15. 자산형성지원사업 내실화 추진

### 희망키움통장Ⅰ 내실화

- ④ **(타 서비스 연계 지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상 사회취약계층 월세 대출 상품 연계 지원**  
\* 수급자 대상 통장Ⅰ, 차상위 대상 통장Ⅱ 모두 포함
- ④ **(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 명확화) 자활장려금과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이중 지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소득은 희망키움통장 장려금과 자활장려금 중 선택해서 수급**  
\* 희망키움통장 장려금 수급 시 자활장려금 미지급

16

## 16. 자산형성지원사업 내실화 추진

### 내일키움통장의 안정적 운영

- ③ 매출액 10% 미만 사회서비스형(사회서비스형B) 내일키움통장 적립율 상향 조정(1:0.2  $\Rightarrow$  1:0.3)
- ③ 내일키움통장 유지 독려를 위해 가입인원 및 유지율을 근거로 지역자활센터에 인센티브(연 1회 성과급) 지급
  - \* (재원)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사 예산 활용

17

## 17.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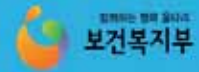
### 희망키움통장 I 내실화

- ③ 1인가구의 10kg 포장 상시 공급
  - \* (기존) 1인가구의 경우 2개월에 1회 구입(20kg), 1인 가구에 한 해 7,8월 10kg 공급 가능
  - \* (개정 내용) 1인가구의 경우 매월 10kg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15.4월~), 2인 이상 가구도 7, 8월에는 10kg 신청 가능
- ③ 1인가구 지원대상자의 장기입원(3개월 이상)시, 퇴원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구입 제한 가능

18

2015년도  
자활사업안내 주요 개정내용

감사합니다.





### 3. 근로능력평가, 자활기업



# 근로능력판정, 자활기업



함께하는 행복 올타리  
보건복지부

## I. 근로능력판정



## 사업 개요



### 법령근거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 있는 자에 대한 급여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제1항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제2호)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평을 통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제5호)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사업개요



### 평가 목적 및 결과 활용

#### 목 적

근로능력 유·무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에게는 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탈수급·탈빈곤 촉진

#### 결과활용

- 생계급여 지급 시 근로조건 부과(자활사업 참여)
- 의료급여 종류 결정  
(1종 : 입원비 전액지원, 2종 : 일부 본인 부담)



## 사업개요



### 평가 대상 및 유형

#### 평가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신청한 자(2014년도 기준 193천명)

※ 평가 제외자(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중증장애인, 시군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근로가 곤란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상 4급 이내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의한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복지부 고시: 희귀난치성 질환자(141개 목록)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 사업개요



### 평가 유형

#### 평가유형

| 구 분    | 내 용                                                                     |
|--------|-------------------------------------------------------------------------|
| ① 신규평가 | • 기존 수급자 중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 및 신규 수급권자가 근로능력 판정을 신청하는 경우 |
| ② 정기평가 | • '근로능력없음' 판정의 유효기간 만료 도래 예정자에 대한 평가                                    |
| ③ 직권평가 | • 지자체 공무원이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대해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
| ④ 재평가  | • ①~③의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불복하여 재판정을 신청한 경우                                      |

## 주요 변경내용 1



### 2014.3.19 근로능력평가기준 개정

| 구분                    | 개정 前                                                                                           | 개정 後                                                                                                                                       |
|-----------------------|------------------------------------------------------------------------------------------------|--------------------------------------------------------------------------------------------------------------------------------------------|
|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평가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 65세 생일이 속한 이전 달까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세(15년 기준 1997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65세(15년 기준 1950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li> </ul>              |
|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평가 미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신설&gt;</li> <li>희귀난치성 질환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li> <li>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희소질환자만 해당) 등록자</li> </ul>                         |
| ㉢ 진단서 유효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개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개월</li> <li>단 진단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공단에서 평가가 끝나지 않은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기존 질병의 평가 결과 인정 가능</li> </ul> |
| ㉣ 활동능력평가 항목 일부 수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개 항목</li> <li>- 이해력 기초학습활동능력 동시업무수행능력 등 추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개 항목</li> <li>- 취업가능성 항목 평가 수정, 학력 → 취업경력</li> </ul>                                              |

## 주요 변경내용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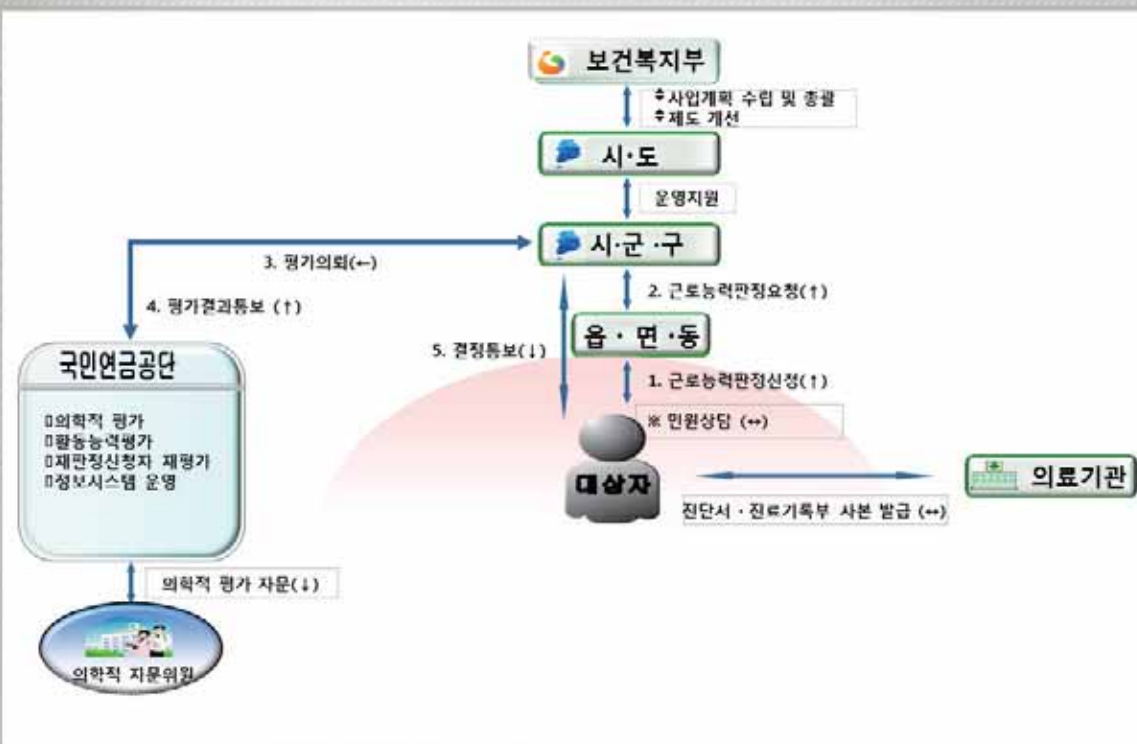


| 구분              | 개정 前                                                                                                                                                                                                                  | 개정 後                                                                                                                                                                                                 |
|-----------------|-----------------------------------------------------------------------------------------------------------------------------------------------------------------------------------------------------------------------|------------------------------------------------------------------------------------------------------------------------------------------------------------------------------------------------------|
| ㉤ 근로능력 없음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학적 평가 4단계</li> <li>의학적 평가 3단계 이하로서 활동능력 간이평가 3단계 이하</li> <li>의학적 평가 3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52점 이하</li> <li>의학적 평가 2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44점 이하</li> <li>의학적 평가 1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36점 이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학적 평가 3, 4단계</li> <li>의학적 평가 2단계 이하로서 활동능력 간이평가 3점 이하</li> <li>&lt;삭제&gt;</li> <li>의학적 평가 2단계로서 활동능력평가 44점 이하</li> <li>의학적 평가 1단계로서 활동능력평가 36점 이하</li> </ul> |
| ㉥ 판정결과 유효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년</li> <li>- 의학적 평가 결과가 4단계이고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으로 평가된 경우 2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년</li> <li>- 의학적 평가 결과가 4단계이거나, 1~3단계 중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으로 평가된 경우 2년</li> </ul>                                                                                   |
| ㉦ 질병고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단계 : 판정 유효기간 2년</li> <li>3단계 이하: 다음연도 의학적 평가 면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li> <li>판정 유효기간 2년</li> </ul>                                                                                                                           |
| ㉧ 유효기간 만료예정자 추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료 60일전(매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료 70일전(매일)</li> </ul>                                                                                                                                        |

## 주요 변경내용 3

| 근로능력판정 흐름도                                                             |               |     |                          |         |               |               |  |
|------------------------------------------------------------------------|---------------|-----|--------------------------|---------|---------------|---------------|--|
| 의학적 평가                                                                 | 단계외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 <div> <div>합계 점수 10점 미만</div> <div>전체 평가</div> <div>간이 평가</div> </div> |               | 60점 | 근로능력 있음                  | 근로능력 있음 |               |               |  |
|                                                                        |               | 44점 |                          |         |               |               |  |
|                                                                        | 근로능력 있음       | 36점 | 근로능력 없음                  | 근로능력 없음 | 근로능력 없음       | 근로능력 없음       |  |
|                                                                        | * 활동능력 평가 불필요 |     | 간이평가 3개 항목(12점) 합계 3점 이하 | 근로능력 없음 | * 활동능력 평가 불필요 | * 활동능력 평가 불필요 |  |

## 추진체계



## 근로능력평가 절차



| 절 차          | 수행기관(장소)         | 주 체         |
|--------------|------------------|-------------|
| 근로능력평가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기초수급자       |
|              | ↓                |             |
| 근로능력평가 의뢰    | 시·군·구 → 공단       | 지자체 공무원     |
|              | ↓                |             |
| 의학적 평가       | 공단(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 | 자문의사, 공단 직원 |
|              | ↓                |             |
| 활동능력 평가      | 공단 지사(대면심사)      | 공단 직원       |
|              | ↓                |             |
| 근로능력평가 결과 전송 | 공단 → 시·군·구       | 공단 직원       |
|              | ↓                |             |
| 근로능력 판정      | 시·군·구            | 지자체 공무원     |
|              | ↓                |             |
| 근로능력 판정결과통보  | 시·군·구 → 기초수급자    | 지자체 공무원     |

## 기관별 수행업무



| 기 관   | 수 행 업 무                                                                                                                                                 |
|-------|---------------------------------------------------------------------------------------------------------------------------------------------------------|
| 보건복지부 | □ 사업총괄                                                                                                                                                  |
| 지자체   | □ 사업안내 및 홍보<br>□ 신청서 접수(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br>□ 근로능력평가 의뢰<br>□ 재판정 신청서 접수<br>□ 평가결과에 의거 최종 근로능력판정(근로능력 유·무)<br>□ 이의신청 처리 및 통지 등<br>□ 근로능력판정조정위원회 운영 |



## 기관별 수행업무

| 기 관                        |                   | 수 행 업 무                                                                                                                                                                         |
|----------------------------|-------------------|---------------------------------------------------------------------------------------------------------------------------------------------------------------------------------|
| 국<br>민<br>연<br>금<br>공<br>단 | 본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능력 판정 권리구제 제도 운영지원</li> <li>□ 사업계획 수립 등 공단 내 근로능력평가업무 총괄</li> <li>□ 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 평가 모니터링</li> <li>□ 근로능력평가 정보시스템(NPiS)운영</li> </ul> |
|                            | 심사센터<br>및<br>지역본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학적 평가</li> <li>□ 의학적 평가를 위한 자문위원 운영</li> <li>□ 의학적 평가관련 심층 상담</li> </ul>                                                              |
|                            | 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능력평가관련 안내 및 기초상담</li> <li>□ 의학적 평가 지원</li> <li>□ 방문조사를 통한 활동능력 평가</li> <li>□ 평가결과 지자체 통보</li> </ul>                                  |
|                            | 보건복지<br>정보개발원     | □ 근로능력평가 정보시스템 연계부분 (행복e음, NPiS) 정비·구축·운용                                                                                                                                       |
|                            | 의료기관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

## 단계별 업무처리 1

| 단 계                     | 업 무 내 용                                                                                                                                                                                                                                                                                                        | 처 리 |
|-------------------------|----------------------------------------------------------------------------------------------------------------------------------------------------------------------------------------------------------------------------------------------------------------------------------------------------------------|-----|
| 근로능력판정<br>안내 및 신청<br>접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정기)판정 안내</li> <li>▪ 근로능력판정 신청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 구비서류 확인</li> <li>- 진단서 제출 곤란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 동행 서비스 실시(선별적 서비스)</li> <li>- 신청인 정보 등록 → 시군구에 근로능력판정 요청</li> </ul> </li> </ul> | 읍면동 |
| 평가의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대상자 정보 및 진단서 등 자료 공단으로 파일 전송 (행복e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서 등 스캔가능 서류는 스캔작업 후 전송</li> <li>- CD, 필름 등은 우편으로 송부 가능</li> </ul> </li> </ul>                                                                            | 시군구 |

## 단계별 업무처리 2

| 단 계    | 업 무 내 용                                                                                                                                                                                                                                                                                                                        | 처 리          |
|--------|--------------------------------------------------------------------------------------------------------------------------------------------------------------------------------------------------------------------------------------------------------------------------------------------------------------------------------|--------------|
| 평가접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의뢰건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li> <li>의학적 평가 요청(질환별로 심사센터 또는지역본부 배부)</li> <li>동행서비스(지자체 주관) 지원 또는동행서비스를 실시한 평가대상자 중 거동불편 등 보완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 직접확보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사전지원내용, 장소, 시간 등의 협의 후 요청가능</li> </ul> </li> </ul> | 공단 지사        |
| ↓      |                                                                                                                                                                                                                                                                                                                                |              |
| 의학적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참고하여 의학적 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 자문위원(의사·한의사) 활용, 질환별 의학적 단계 평가</li> </ul> </li> <li>의학적 평가결과 지사로 통보</li> </ul>                                                                                                     | 심사센터<br>지역본부 |
| ↓      |                                                                                                                                                                                                                                                                                                                                |              |

## 단계별 업무처리 3

| 단 계             | 업 무 내 용                                                                                                                                                                                                                                                                         | 처 리   |
|-----------------|---------------------------------------------------------------------------------------------------------------------------------------------------------------------------------------------------------------------------------------------------------------------------------|-------|
| 활동능력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학적 평가 결과를 고려 간이평가 및 활동 능력 정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평가, 관찰평가, 상황평가(주변인 정보 활용) 실시</li> <li>- 취업가능성, 자기관리, 집중력 등 15개 항목 평가</li> <li>- 항목별 능력부재(0점) ~ 능력보유(4점) 점수 부여</li> </ul> </li> </ul> | 공단 지사 |
| ↓               |                                                                                                                                                                                                                                                                                 |       |
| 평가결과 통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결과 지자체 통보(공단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li> </ul>                                                                                                                                                                                                  | 공단 지사 |
| ↓               |                                                                                                                                                                                                                                                                                 |       |
| 근로능력 판정 및 결과 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단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근로능력 판정</li> <li>판정결과를 기초수급자에게 통지(신청 후 30일 이내)</li> </ul>                                                                                                                                                                 | 시군구   |
| ↓               |                                                                                                                                                                                                                                                                                 |       |

## 단계별 업무처리 3

| 단 계              |      | 업 무 내 용                                                | 처 리          |
|------------------|------|--------------------------------------------------------|--------------|
| 권<br>리<br>구<br>제 | 재판정  | ▪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재판정 신청서 제출                      | 시군구          |
|                  |      | ▪ (의학적 재평가) 자문위원 재선정 후 재평가                             | 심사센터<br>지역본부 |
|                  |      | ▪ (활동능력 재평가) 평가자 재선정 후 재평가                             | 지사           |
|                  |      | ▪ (재판정) 의학적·활동능력 재평가 결과 반영 재판정                         | 시군구          |
|                  | 이의신청 | ▪ (1차) 시·군·구청장 처분에 불복 → 시·도지사<br>에 이의신청(국민기초생활보장법 38조) | 시·도          |
|                  |      | ▪ (2차) 시·도지사 처분에 불복 → 보건복지부<br>장관에 이의신청(국민기초생활보장법 40조) | 보건<br>복지부    |

## 지자체 유의사항

### 구비서류 확인

#### 구비서류 확인

#### 필수 구비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원칙적으로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 발급 가능)
-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부 사본
- 소견서(해당하는 경우)

#### 추가 구비서류(선택)

-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소견서 등
- ☞ 전년도 근로능력평가 결과 익년도 의학적 평가 면제시 제출 생략 가능(근로능력평가 신청서로 확인)

# 지자체 유의사항



## 평가대상 질환

평가대상 질환

### 진단서 발급대상 질환

- 1)근골격계    2)신경기능계    3)정신신경계
- 4)감각기능계    5)심혈관계    6)호흡기계
- 7)소화기계    8)비뇨생식계    9)내분비계
- 10)혈액 및 종양질환계    11)피부질환계



# 지자체 유의사항



## 평가대상 질환

평가대상 질환

다음의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 내에서 상병부위가 다를 경우에도 평가대상 질환으로 간주하여 각각 평가

- 근골격계 질환 <상·하지> 및 <척추>
- 감각기능계 질환 <청각>, <평형> 및 <시각>
- 소화기계 질환 <간질환> 및 <위장질환>
- 피부질환계 질환 <피부질환> 및 <외모 및 결손질환>



## 지자체 유의사항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진단서 발급 주체                                                                                                     |                                          |
|---------------------------------------------------------------------------------------------------------------|------------------------------------------|
| 평가대상 질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                        |
| 근골격계<br>신경기능계                                                                                                 |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                  |
| 정신신경계                                                                                                         | -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br>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 |
| 감각기능계, 심혈관계,<br>호흡기계, 소화기계,<br>비뇨생식계, 내분비계,<br>혈액 및 종양질환계<br>피부질환계                                            |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
| <p>☞ 기질성 정신질환은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br/>질환으로 입원중인 경우 담당의사도 진단서 발급 가능</p> <p>☞ 진단서 유효기간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p> |                                          |

## 지자체 유의사항



### 구비서류별 확인사항

| 구                      | 분        | 평가자료                                                                                                                                                                                                                                                             |
|------------------------|----------|------------------------------------------------------------------------------------------------------------------------------------------------------------------------------------------------------------------------------------------------------------------|
| 근로<br>능력<br>평가용<br>진단서 | 유효<br>기간 | - 지자체 접수일자로부터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br>것이어야 유효                                                                                                                                                                                                                           |
|                        | 발급<br>기준 | <p>- 일반질환 : 통원이나 입원치료가 있는 경우 가능</p> <p>- 만성질환 : 최근 2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br/>경우에만 가능</p> <p>- 정신신경계 질환 :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br/>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p> <p>* 자해 및 타해 등 위험으로 시급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br/>선천적 지적능력 저하 등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및 악화의<br/>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p> |

## 지자체 유의사항



### 구비서류별 확인사항

| 구 분                    |                      | 평가자료                                                                                                                                                    |
|------------------------|----------------------|---------------------------------------------------------------------------------------------------------------------------------------------------------|
| 근로<br>능력<br>평가용<br>진단서 | 진단서<br>기재<br>사항      | - 진단대상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진단질환명<br>(평가대상 질환명, 상세질환명, KCD 분류번호, 진료기간),<br>근로능력 평가내용, 치료 경과내용, 발급기관(의료기관명,<br>면허번호, 발급의 성명 등), 발급일자, 의료기관 직인<br>등 확인      |
|                        | 평가<br>의뢰<br>질병<br>건수 | - 2종류 질병<br>- 동일 평가대상 질환 내에서는 1개 질병만을 평가 의뢰<br>· 근골격계(상하지/척추), 감각기능계(청각/평형/시각),<br>소화기계(간질환/위장질환), 피부질환계(피부질환/<br>외모 및 결손질환)는 별도의 평가대상 질환으로 보아<br>평가 가능 |

## 지자체 유의사항



### 구비서류별 확인사항

| 구 분               | 평가자료                                                                                                                                                                               |
|-------------------|------------------------------------------------------------------------------------------------------------------------------------------------------------------------------------|
| 진료기록부<br>사본       | - 최근 2개월분<br>· 최근 2개월의 진료기록 전부<br>(예 : 10일간의 진료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10일치의 기록 첨부)                                                                                                            |
| 소견서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다음에 해당하는<br>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br>기재한 소견서 첨부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 가능<br>(만성질환 제외)<br>·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병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던 경우<br>·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상태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
| 추가전송<br>(진료기록부 등) | - 근로능력평가 요청중인 평가대상자에 대한 추가자료<br>발생시 국민연금공단에 송부 가능<br>· 송부가능서류: 평가요청중인 질병 관련 진료기록부 등<br>※ 당초 평가 요청한 질병과 다른 질병에 대한 서류(진단서등)<br>은 불가능<br>· 전송가능시기: 국민연금공단 진행단계 중 접수단계까지               |

## 지자체 유의사항



### 협조사항

#### 신청 및 접수

- 최초 상담 및 서류 접수시 가장 중한 질환의 진단서를 접수  
※ 대상자 특성상 진단서 발급비용을 고려하여 2종류 이상의 질환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2개 질환만** 평가를 실시

#### 구비 서류 확인

- 지자체에서 공단으로 근로능력평가 의뢰시 정확한 구비서류 확인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소견서(필요시) 등 서류 확인 철저

## 지자체 유의사항



### 협조사항

#### 자료보완

- ▼ 절차 : 공단 → 시군구 → 평가대상자 → 시군구 → 공단
- (공단) 정확한 근로능력평가(의학적 평가)를 위해  
검사결과지, 소견서 등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시군구) 평가대상자에게 자료보완 안내서로 안내
- ☞ 보완대상자가 자료보완 연장을 원할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처리 가능함(공단에 연장통보)



## 지자체 유의사항



### 협조사항

#### 반려대상

- 자료보완 2회 이상 요청에도 미보완 시, 공단 직접진단 2회 이상 불응시, 활동능력평가 2회 이상 거부시 공단은 지자체로 근로능력평가를 반려할 수 있음

#### 근로능력판정

- 통지 방법
    - 근로능력 있음 (서면)
    - 근로능력 없음 (서면, 구두, 전화, 컴퓨터통신 등으로도 가능)
  - 유효기간 : 1년
    - 의학적 평가결과가 4단계이거나\*,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된 경우 2년임
- \* 2014년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반영

## 지자체 유의사항



### 협조사항

#### 기타

- 평가의뢰 시 대상자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타요청내용”란에 공단평가 시 참고사항 기재 후 의뢰
  - \* 감염성 질환, 음주 습관, 생활환경 등
- 근로능력 평가 중 소득 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자 선정 기준 미달된 것으로 확인 시 즉시 공단 지사로 취소 요청 (수급자 미선정된 자에 대하여 활동능력평가 출장 사례 발생)



## '15년 개선 사항



### 근로능력 평가 기준 고시 개정 (‘15.4)

- 활동능력 평가방식 개선: 현행 1개 항목 당 점수 부과 방식에서 '종합평가방식'으로 변경
- 활동능력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한 평가기준 마련
- 15개 항목, 15개 평가기준 →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

### 장애(등록) 심사자료 열람 (활용) 추진 (‘15.8)

- 근로능력판정신청서 작성시 장애연금 및 장애등록심사 자료를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활용
- 자료보완으로 인한 수급자의 추가 비용(1억원) 절감

## '15년 개선 사항



### 자료보완 비용 지원 (‘15.6)

- 공단에서 요청한 자료보완에 대해 발급비용이 지출된 대상자 중 비용지원을 희망하는 자
- 1인당 10만원 한도에서 지원

### 평가소견 표준 화를 통한 평가결과 안내 (‘15.8)

- 의학적 평가, 활동능력평가 종합 소견을 작성하여 '근로능력 판정 결과서'에 반영(현재는 근로능력 있음, 없음만 공개)
- 수급자가 알기 쉽도록 쉬운 단어와 정중한 어체 사용

### 근로능력 평가결과 의 자활사업과 연계강화 (‘15.10)

- 지자체 '자활역량평가'시 공단의 '근로능력평가' 결과 활용
- 자활역량평가표 중 '재량점수'에 특이사항을 반영한 점수를 구성하여 지자체 자활사업 선정시 현재 건강상태 반영
- \* 지자체 전송 '특이사항' 기재내용 표준(안) 마련

## II. 자활기업



### 사업개요



#### 법령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광역·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지자체 사업의 우선위탁, 국가·지자체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지원 대상 자활기업)

- ① 법 제18조3항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기업은 그 구성원 중 수급자가 3분의 1이상인 자활기업으로 한다.
-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던 자활기업이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자활기업의 존립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이상인 자활기업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법 제18조의 3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사업개요

### 자활기업 설립요건

#### 구성원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1인이 창업한 경우 자활기업이 아닌, 개인창업으로 관리
  - 조건부수급자가 취·창업한 경우 "근로"로 인한 조건부와 제외자로 처리하지 않고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처리

####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 설립절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자활기업

#### 지원요건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이상
  - 기존 자활기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 1/5까지 인정(해당 자활기업은 3년의 범위에서 지원)
- 모든 구성원(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 수익금 배분이 가능해야 함
  -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 3월의 수익금 발생현황을 기준으로 자활기업 전환 후 월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
  - 이 경우 수익금은 매출액에서 자재비, 제세공과금 등 필요경비를 제하고 실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임
-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또는 평균 4일 이상(22시간 이상)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 자활근로사업단에 소속되지 않았던 사람을 참여시킬 경우 경영·기술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함(전체 인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개요

###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 창업후 지원확대

#### ●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재원 : 자활기금)

- 창업 후 3년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기계설비 구입시 기계 등은 지역자활센터 명의로 하고 자활기업 지원기간 종료 후 자활기업 일부부담을 통해 명의를 자활기업으로 이전 가능
- 시설보강 인테리어 등 소모성 지원의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 교육지원 확대

#### ●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

- 창업 또는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맞춤형 컨설팅 자부담금 지원

※ 재원 :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또는 자활기금



## 사업개요

###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 지원기간

- 보장기관은 지원대상 자활기업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년동안 직접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지원
- 자활기업 추가 지원기간은 2년(최초 결정일 기준 5년)
- 지원기간 종료 후 보장기관은 자활기업 구성원 중 수급자가 1/3 이상인 경우 계속지원 가능
  - 자활기업은 중자의 자활기업 등록시스템에 매분기 실적 등록
  - 보장기관은 등록실적을 면밀히 검토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결격사유 발생시 3개월간 보완 기간 부여 후 보완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교육지원 확대

#### ●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

- 창업 또는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맞춤형 컨설팅 자부담금 지원

※ 재원 :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또는 자활기금



## 사업개요



###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 한시적 인건비 지원

##### ● 수급자(자활특례 포함)

- 지원 내용
- (2년까지) 인건비 및 기타수당 지원금액의 100% 지원
- (2년초과 -5년까지) 인건비 및 기타수당 지원금액의 50%

##### ●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지원

- 지원기간 : 창업후 최대 3년
  - 재원 : 자활기금
  - 지원액 : 자활기업 별 월200만원 한도(기업부담 4대 보험료 포함)
  - 전문가 범위 : 세무·회계·업종관련 전문가(자격보유)로 한정
- ※ 보장기관은 6개월마다 자활기금 활용을 승인 검토



## 사업개요



### 보장기관의 사후관리

#### 자활기업 등록시스 템 등록

##### ●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는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기간 동안 자활기업 정보등록시스템에 분기별 등록

- 중앙자활센터는 분기 익월 15일까지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는 보고자료를 확인 후 자활기업의 지원 중단 및 지원내역 환수
  - 지원대상요건 불충족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와 협의하여 개선 대책을 보장기관에 보고하고, 개선결과를 1개월 내 제출
  -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의 개선결과에 따라 지원 지속여부 검토
- ※ 보장기관은 6개월마다 자활기금 활용을 승인 검토



# 사업개요



##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 '15년 상반기 지급 방법

-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는 3년에 1회 지원규정을 '15년1-6월까지 적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주거현물급여 지원
-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의 명단은 '15.1월중 시도별 별도 송부
- 보장기관은 명단의 가구 중 신청자에 대해 '15.6월까지 주거현물 급여 지급 완료
- "자가가구 등" 중 '15.6월까지 집수리를 지원받은 경우, '17년 주거현물급여 시 우선 대상으로 선정 예정
- 시군구는 '15년.1월중 자가가구를 조사하여 상반기에 전년대비 50% 이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희망사다리

## 2015년 주거 현물급여 기준액

| 가구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현물 급여 | 28,500원 | 49,000원 | 64,000원 | 77,000원 | 92,000원 |

5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15,500원 추가

※ 가구당 주거현물급여의 상한금액은 220만원 ('15년 1-6월)

#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행복 물타리  
보건복지부







## 4. 자산형성지원사업



#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방향 (희망·내일키움통장)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안)



보건복지부

[www.mw.go.kr](http://www.mw.go.kr)

제1장. 2014년 추진현황

제2장. 2015년 추진계획

제3장.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른 추진방향

## 2014년 추진현황

### 1 개요

-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 및 탈빈곤 물질 기반 마련 등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 추진 중
  -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I 도입, 시행 (' 10.4월~)
  -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내일키움통장’ 도입, 시행 (' 13.3월~)
  - 근로빈곤층의 절대 빈곤 진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상위 대상한 희망키움통장 II 도입(' 14.7월~)
- ☞ 일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기본 틀이 완성

3

## 2014년 추진현황

### 1 개요

| 구 분    | 희망키움통장                            | 희망키움통장 II                           | 내일키움통장                                 |
|--------|-----------------------------------|-------------------------------------|----------------------------------------|
| 가입 대상  | 일하는 수급자가구<br>(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 | 일하는 차상위가구<br>(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br>(최근 3개월 성실 참여자)         |
| 본인 저축액 | 10만원                              | 10만원                                | 5만원 또는 10만원(선택)                        |
| 정부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br>(월 평균 25만원)            | 10만원<br>(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br>(본인저축액 1:1(0.5, 0.3) 매칭 지원) |
| 추가 지원액 | -                                 | -                                   | 내일키움수익금 등<br>(월 평균 8만원)                |
| 지원 조건  |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 통장 3년 유지<br>(사용용도증빙 의무교육이수)         |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및 교육 이수              |
| 실질 혜택  | (3년 기준) 평균 1,700만원 적립             |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적립                 | (3년 기준) 평균 1,100만원 적립                  |

4

## 2014년 추진현황

### 2 14년 가입 현황

희망키움통장은 5.2천가구, 희망키움통장 II 10천가구, 내일키움 통장은 2.2천명 신규 가입



## 2014년 추진현황

### 3 희망키움통장 만기 해지 현황('14. 8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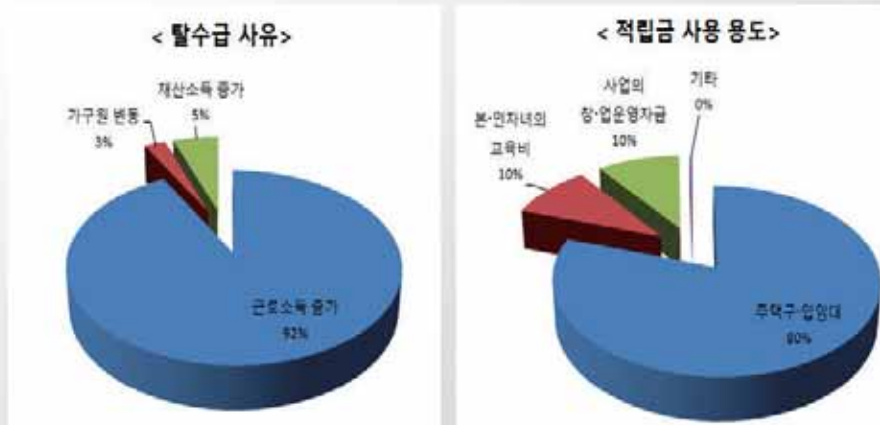
< '11년 상반기 가입가구 해지 현황 >

| 구분            | 가입가구            | 해지 현황            |                       |                          | 해지 진행중       |
|---------------|-----------------|------------------|-----------------------|--------------------------|--------------|
|               |                 | 소계               | 탈수급 해지<br>(특별중도해지 포함) |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br>(중도해지 포함) |              |
| 계             | 2,336<br>(100%) | 2,304<br>(98.6%) | 1,618<br>(69.3%)      | 686<br>(29.4%)           | 32<br>(1.4%) |
| 11년1기<br>(4월) | 1,323<br>(100%) | 1,318<br>(99.6%) | 932<br>(70.4%)        | 386<br>(29.2%)           | 5<br>(0.4%)  |
| 11년2기<br>(7월) | 1,013<br>(100%) | 986<br>(97.3%)   | 686<br>(67.7%)        | 300<br>(29.6%)           | 27<br>(2.7%) |

## 2014년 추진현황

### 3 희망키움통장 만기 해지 현황('14. 8월말 기준)

< 탈수급 사유 및 적립금 사용 용도 >



7

## 2014년 추진현황

### 4 14년 추진실적

- ④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대상 발굴·지원('13.2~12월)
  - (모집가구 및 시기) 희망 5전, 내일 2전 / 연 10회 분할
- ④ 희망키움통장 II 신규 시행('14.7~12월)
  - (모집가구 및 시기) 희망 II 10전 / 연 3회 분할
- ④ 지자체(자활센터) 컨설팅 실시('13.7, 11월 / 20개 지자체)
  -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정부·민간지원금,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 지급 해지에 대한 중병서류 등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실시(중앙자활센터 협조)
- ④ 통장 가입자 대상 재무교육 실시(반기별 1회, 전국 지자체)
  - 성공적인 자립지원, 건전한 재정상태 유지를 위해 재무교육 실시(국민연금공단 협조)

8

## 2015년 추진계획

### 1 희망키움통장 II 안정화

※ 15년 20천가구 신규 모집 예정

#### ② 희망키움통장 II 가입자 발굴 강화

- (협조체계 구축) 고용·복지+센터, 고용센터, 국세청,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희망키움통장 II 가입자 발굴 강화
- (홍보 지속) '15년 모집과 더불어 우수 사례 홍보, 홍보물 (리플렛, 포스터 등) 배포 등을 통해 일반 국민대상 홍보 강화
- 지역신문, 반상회 및 이·통장, 부녀회 등을 통한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강화 병행

9

## 2015년 추진계획

### 1 희망키움통장 II 안정화

#### ② 근로사업소득 기준 관련 공적소득 증빙 완화

- (당초) 국세청,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공적자료로 증빙된 소득만 반영
- ☞ (개선) 소득파악 현실을 감안하여 당초에 미신고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상 「고용·임금 확인서(서식 16호)」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소득으로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 ② 확인조사 기준 개선

- (당초) 연 2회 확인 조사 실시 ☞ (개선) 연 1회 이상 확인 조사 실시

#### ② 중도환수해지자에 대한 재가입 등 처리방안 명확화

- (당초) 행복e음과 하나은행 정보 불일치 시 확인조사 시 자료 일치 실시
- ☞ (개선) 해지자 정보에 대해 지자체(시군구) 담당자가 수시로 행복e음 정보를 변경가능하도록 개선

10

## 2015년 추진계획

### 1 희망키움통장 II 안정화

#### ● 사례관리 · 교육 강화

##### ■ 사례관리 내실화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II 수행기관 관리인력 확대

\* (인력 증원) 16개 시·도 1명 → 시도별 가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4명으로 확대

##### ■ 특별 심화 사례관리 실시

\* 희망키움통장 II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축독려, 교육 안내 등 통장유지 외에 사례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복지서비스·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심화 사례관리 실시 (사례관리자 1인 당 연 30가구)

#### ● 가입자 대상 교육 내실화를 위한 집합 교육 외에 동영상 교육과정 마련

##### ■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하여 집합 교육 참여가 곤란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동영상 강의 수단이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 마련

\* 단,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서 가입기간(3년) 중 6회(연 2회) 중 3회(연 1회) 이상은 집합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함

11

## 2015년 추진계획

### 2 희망키움통장 I 내실화

####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상 사회취약계층 월세대출 상품 연계 지원

#####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통장 I, 통장 II 모두 포함) 대상으로 월세대출 상품 연계 지원 \* 지자체는 통장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통장 가입 유지 확인서 발급

<사회취약계층 월세대출 상품(안)>

- (지원대상)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 단,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 거주자는 대출 불가
- (지원내용)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
  - \* 기본금리 2%, 3년 만기일시 상환(1년 단위 3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운영)
- (지원규모) 15년 500억원 범위내 시범사업 (판도조파시 지원중단) \*주책자금 80%+복권자금 40%
- (취급기관) 우리은행

#### ●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 명확화

##### ■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소득은 원칙적으로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에 해당. 단, 자활장려금 지급 시는 제외

12

## 2015년 추진계획

### 3 내일키움통장의 안정적 운영

#### ● 매출액 10% 미만 사회서비스형(사회서비스형B) 내일키움통장 적립율 상향

- (지원수준) 내일키움장려율 1:0.2 ⇒ 1:0.3

\* 본인적립금 5/10만원에 대해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1.5/3만원 지원

- (재원) 중앙자산키움펀드 활용

\* 단, 사업단의 매출액이 0원인 경우는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에서 제외

#### ● 내일키움통장 가입 유지율 제고 독려

- 내일키움통장 유지 독려를 위해 가입인원 및 유지율을 근거로 지역자활 센터에 인센티브(연 1회 성과급) 지급

#### ● 내일키움수익금 적립방식 개선

- 내일키움수익금을 연 1회 개인별 가상계좌 적립에서 반기별 적립으로 변경

\* 2분기 가정산 후 70% 확정금액 적립 후 4분기 진정산 완료 후 최종금액 적립

13

##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추진방향

### 1 희망키움통장 I : 탈수급 지원

#### ● (희망키움통장 I)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정책으로서 정부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대상 · 지원수준 조정

- (지원대상) 현재 최저생계비 수준(중위소득 40% 수준)을 고려하여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I 지원
- (지원금액)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현재 지원수준(4인가구 최대 55만원) 등을 감안, 급여별 인센티브 상향\* 조정(예산 범위 내)

\* (예시) 생계급여 : 1.15(4인 가구 최대 46만원), 의료급여 : 0.85(4인가구 최대 57만원)

14

##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추진방향

### 2 희망키움통장 II : 사전 예방 정책

- ◎ (희망키움통장 II) 빈곤계층으로의 진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정책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지원대상 확대 필요
  - (지원대상)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중위 50% 이하 비수급 빈곤층
    - 단, 근로빈곤층의 욕구(주거, 의료, 교육 등)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소득·재산 등) 개선 추진
    - 이와 더불어, 고용센터·국민연금공단등과의 업무 협조체계 구축, 바우처 이용자 분석을 통한 타겟 홍보 등 가입자 발굴 강화
    - 중장기적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제고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영국과 같이 타 급여(ETIC 등)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조사없이 가입을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15

##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추진방향

### 1 희망키움통장(Ⅰ) 내실화

- ◎ (내일키움통장)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연계하여 자활장려금 예산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유인 제고 지원을 위해 내일키움통장 지원 전환 검토(16년 이후)

#### < 내일키움통장 개편(안) >

- (지원대상) 자활사업 참여자(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에서 인턴, 도우미형 추가 확대방안 검토)
- (지원수준) 정부지원금 1:1 매칭 지원, 5만원 또는 10만원, 사업단에 따라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추가 지원
- (지원요건)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3년 내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장업\* 또는 탈수급 시 지원
  - \* 최저임금 이상,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대상
  - \* 최저임금 이하 등 경제적 일자리 취업자에 대해서도 일부 지급 예지 방안 검토



16

# 감사합니다







## 5. 자활인프라 운영 · 관리



# 자활사업 조직관리의 이해

## 목 차

1. 자활지원센터
2. 중앙·광역·지역자활센터
3. 한국자활연수원
4. 유형 및 기능 다변화

# 자활지원센터

## 자활지원센터 개요

### 중앙자활센터

#### ■ 1개소

- 자활사업 정책개발 기반 조성을 통한 자활사업 추진 방안 마련
-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평가

### 광역자활센터

#### ■ 14개소

-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
-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자활사업 추진
- 자활사업 효과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지역자활센터

#### ■ 247개소

- (지역별) 도시형 126, 도농복합형 55, 농촌형 66개소
- (규모별) 확대형 64, 표준형 123, 기본형 60개소

# 중앙자활센터

## 중앙자활센터 개요

### 목적

- 자활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업무를 전담하여 자활사업 지원체계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주요 사업

-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사업
-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기술·경영지도 및 평가
- 자활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전국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업 컨설팅 및 광역단위 자활기업 관리
-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광역자활센터

## 광역자활센터 개요

**목적** ■ 중앙-광역-지역으로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자활지원 인프라를 통한 자활사업의 내실 및 자활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체계 형성

**주요 사업**

- 시·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 시·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지원 지원 및 알선
- 시·도 단위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 시·도 단위의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 시·도 단위의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 시·도 단위의 자산형지원사업을 위탁 운영
- 기타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광역자활센터

## 광역자활센터 지정

**지정** ■ 광역자활센터는 양도·양수할 수 없으므로 지정취소가 원칙  
변경지정 처리절차는 신규 지정시 방법 및 절차와 동일하게 추진



#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개요

**목적**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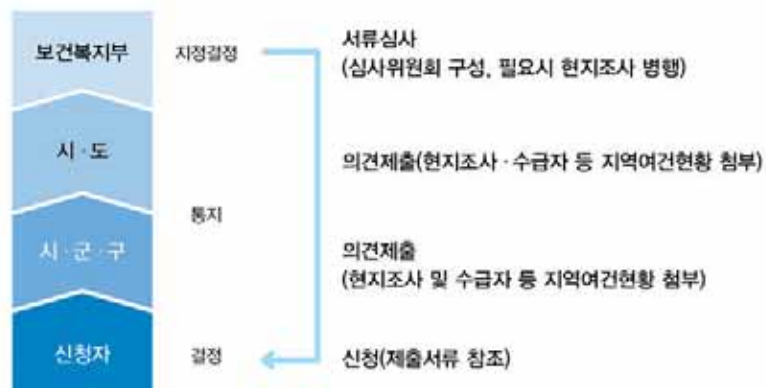
**주요 사업**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  
■ 사회서비스지원 사업  
■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정관에 따른 중앙회비 납부로  
건전한 지역자활센터 네트워크 육성

#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지정

**지정** ■ 지역자활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



#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운영주체 변경

### 가. 신청 법인 등의 변경

지역자활센터는 양도·양수할 수 없음 → 지정취소가 원칙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운영주체 변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새로운 법인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단계부터 복지부와 사전 협의

필요서류 : 시군구 검토의견서, 지정서 반납 및 반납사유서,  
신규 기관의 선정 경과보고서, 조사 의견서, 센터장 이력서 등

### 나. 센터장 변경

운영 법인·단체 :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추천

시군구청장 : 변경(교체) 적정성 여부를 최종 처리 후 복지부장관 보고

### 다. 주소 변경 등 경미한 경우 사유 등을 적시 하여 복지부에 보고

#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지정 취소

### 가. 지정취소 대상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 자활속진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자활센터 지정시 부여 받은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

지도·점검 결과 자활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보조금 횡령 등 자활사업에 심각한 훼손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기관**

### 나. 지정취소 절차

평가 또는 지도·점검결과 지정취소 대상 선정

→ 대상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 및 의견 청취

→ 대상 자활센터 관할 시도 및 시군구청장의 의견 청취

→ 지정취소 등 결정

→ 장관은 지정취소 시 그 사유를 명시 센터장, 시도, 시군구 통지

#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예산 편성

### 가. 예산·결산의 총괄 관리

(예산편성의 승인) 지역자활센터의 편성된 예산안은 **운영위원회** 회의 심의 후 보장기관의 장이 승인함으로써 확정

★ 관련 지침 내용 : 예산 중 500만원 이상이 변경 된 경우 시군구청장의 사전 승인 (500만원 미만은 사후 보고,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의 제출)

### 나. 예산의 편성

(세입예산) 국가·지자체의 운영비 보조금, 법인전입금, 자활근로 사업비, 자활사업 사업단 운영에 따른 수입금, 기타 수입

(세출예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자활사업단별 지출(자활근로 사업비,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로 구분 관리

(합리적 예산 편성)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각의 사업계획을 고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적정비율을 유지

#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예산 편성

### 다. 수입과 지출

(수입의 분류) 보조금 수입, 차입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후원금, 매출액 등 지출은 사전에 품의가 있거나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후 집행  
지출은 보조금 전용카드 등에 의한 지출 또는 계좌이체 원칙

### 라. 후원금 관리

후원금 영수증 발급,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 공개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예산 편성

#### 마. 예산의 편성 및 지출의 정보시스템 관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예·결산 및 지출 관리  
시군구 : 운영비보조금, 자활근로사업, 기타 수탁사업 등 지역  
자활센터의 모든 사업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

#### 바. 수익금의 모법인 전출 금지

바우처사업 등 지역자활센터 자체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기관의 모법인에 전출할 수 없도록 규정 운영의 안정성 도모

#### 사. 연가규정 준수

연가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센터장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는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시면으로 촉구 등

##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목적)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을 평가

(유형별 평가)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 구분, 매년 성과평가 실시

(평가대상기간) 매년 1.1 ~ 12.31

(평가지표) 공통지표와 특성화 지표로 구분하여 평가(100점 만점)

(평가기준) 자활기업 등의 설립 및 지원, 지역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정도, 센터 장 및 종사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평가결과 활용)

- 자활사업 제도개선 등에 반영하여 발전방안 마련
- 지역자활센터 지정취소 및 인센티브 지원 반영
- 평가 우수기관 및 종사자 인센티브 지원
- 평가결과 보조금 지원 반영 가능
- 미흡기관(하위10%): 컨설팅 지원, 지도감독 강화, 삼진아웃제 적용

#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규모평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주기) 운영규모 평가주기 3년

(규모결정) 시군구별 조건부수급자 수, 자활센터 참여수급자 등

〈2015년도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현황〉

| 계   | 확대형         | 표준형         | 기본형         |
|-----|-------------|-------------|-------------|
| 247 | 64          | 123         | 60          |
|     | 248백만원 (7명) | 218백만원 (6명) | 185백만원 (5명) |

# 한국자활연수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  
사회적경제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한 자활사업 전문교육기관  
(충북 충주시 소재)

시공('13.2~'14.10월), '15.3월 개원 예정)



 한국자활연수원



##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추진

### 지역자활센터 기능 전환

#### 성과계약제 도입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변화모색 필요
- 매년 평가를 통해 예산 지원에 반영
- 3~5년 단위 종합 평가
- 계약 갱신 결정에 활용

#### 협동조합 전환

- 자생적 운영 및 다양한 자체 사업 추진
-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자생적 운영
- 자활사업단 지원 및 자활기업과 연계를 유도하여 자생적인 자활센터의 새로운 모델 개발

#### 기능개편 연계

- 전환 시범사업 실시 후 단계적 추진
- 지역 및 참여자 여건을 고려한 구분 운영으로 지역 내 개편 우선
- 시군구 복수 설치 지역 및 인접한 지자체 대상

##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추진

### 추진배경

#### 도입

- 근로빈곤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탈빈곤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기능개편 및 자활기업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변화모색 필요

#### 센터

- 밀착형 사례관리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단계적 전환을 지원하고, 현행 보조금 지원방식을 성과계약제로 개편 필요

##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추진

### 시범사업(안)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공모 연도의 성과평가 제외 및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적용

#### 유형

- 사회적협동조합 형태 센터 운영으로 자활사업단 지원 및 자활기업과 연계를 극대화하여 직접고용을 창출하는 지역자활센터 모형 개발

#### 기능

- 지자체 내 2곳 이상 센터 운영지역 및 인접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능 조정을 통한 2~3곳 센터의 기능 연계 및 프로그램 통합 운영

##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추진

### 추진방안

####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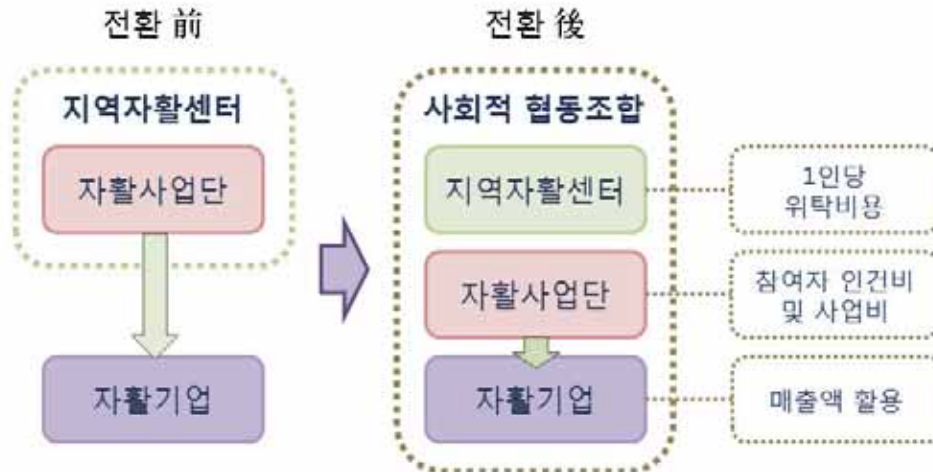
- 지역자활센터 복수 설치 지역 및 지역자활센터 법인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희망하는 센터

#### 방법

- 지역자활센터 및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수행 및 공모 진행

##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추진

### 유형전환 모형



##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추진

### 유형전환 비교

| 구분          | 전환 前                                                             | 전환 後                                                      |
|-------------|------------------------------------------------------------------|-----------------------------------------------------------|
| 운영비         | 기관 규모 평가에 따른<br>운영비 차등 지원<br>(기관당 1.8억 ~ 2.4억원)                  | 자활사업단 인원 <b>에</b> 따른<br>수탁비용 지급<br>(현 운영비 수준에서 년 10%씩 감액) |
| 자활근로<br>사업비 | 인건비, 사업비 비율의<br><b>사업단별</b> 7:3(시장형)<br>8:2(사회서비스형) <b>구분 운영</b> | 인건비, 사업비 비율의<br><b>7:3 통합 운영</b><br>(성과평가 우수기관은 6:4)      |
| 매출액<br>사용   | 각 목적별 구분 사용 후<br>자활기금 적립                                         | 참여자 지원(내일키움장려금 등)<br>목적 외에는 자율 사용<br>(자활기금 적립 없음)         |

##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추진

### 기능조정 예시

| 구분             | 개편 前                                                                                                                    | 개편 後                                                  |
|----------------|-------------------------------------------------------------------------------------------------------------------------|-------------------------------------------------------|
| ○○시 △△구<br>A센터 | <b>각 센터별 동일 업무 수행</b><br><br>- 근로유지형 사업단 운영<br>-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운영<br>- 시장진입형 사업단 운영<br>- 자활기업 설립 및 경영지원<br>- 사례관리 및 참여자 교육 | <b>탈수급집중형</b><br>(대규모 자활기업 설립 및<br>시장진입형 사업단 운영)      |
| ○○시 △△구<br>B센터 |                                                                                                                         | <b>사회서비스공급형</b><br>(근로유지형 및 사회서비스형<br>사업단 운영)         |
| ○○시 △△구<br>C센터 |                                                                                                                         | <b>밀착사례관리형</b><br>(통합교육 및 인턴형 사업단 운영<br>기존 자활기업 경영지원) |

Thank you  
 감사합니다



## 6.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 추진배경

추진배경

근로빈곤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탈빈곤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조정 및 활성화

추진방향

지역자활센터의 법인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및 전문성 강화(복수설치 지역)

(재)중앙자활센터 | 추진배경

## 추진경과

'14. 1월.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다변화 시범사업 계획

3. 17.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관련 전문가 간담회

- 보건복지부, 자활협회, 해당 분야 전문가
- 시범사업 추진계획 설명, 추진 방안 논의

3. 18.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관련 전문가 간담회

- 보건복지부, 자활협회, 해당 분야 전문가
- 시범사업 추진계획 설명, 추진 방안 논의

4. 29.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관련 통합 간담회

- 보건복지부, 자활협회, 광역자활센터, 분야별 전문가
- 자문회의 구성, 컨설팅 기관 자문, 진행일정 협의

(재)중앙자활센터 | 추진경과

## 추진경과

6. 27. 지자체 공무원 대상 사업설명회

- 지자체 공무원 80여명 참석
- 시범사업 추진배경, 지자체 협조사항 등

7. 9. 지역자활센터 대상 사업설명회

-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200여명 참석
- 시범사업 추진 방향 및 세부운영방안 설명, 의견 수렴

7. 11. 시범사업 전문가 자문 회의

- 보건복지부, 자활협회, 연구자, 컨설팅기관
- 컨설팅 방향, 심사위원회 구성 등 협의

7. 22.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지원 컨설팅 협약 체결

- 신나는조합, 협동조합연구소

(재)중앙자활센터 | 추진경과

## 추진경과

10. 7. 시범사업 공모 신청 기관 서류심사
- 유형 다변화 9개소, 기능 다변화 2개 지역 신청
  - 보건복지부, 자활협회, 연구자, 컨설팅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10. 14. 서류 심사 합격 지역자활센터 대상 면접심사 및 선정
- 유형 다변화 : 남원, 봉화, 마산희망, 시흥작은자리, 제주이어도
  - 기능 다변화 : 인천 부평구(부평, 부평남부)

11. 3.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교육
- 컨설팅 프로세스, 참여기관 조직진단,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사례, 시범사업 관련 토론

(재)중앙자활센터 | 추진경과

## 추진경과

- 11월 ~ 12월 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컨설팅
- 정관 및 규약 작성, 사업계획 수립, 인가신청 지원

12. 22.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전문가 간담회
- 수요자 중심의 자활사업 개발 및 운영, 교육·사례관리 등 공동사업운영

12. 24.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센터장 간담회
- 시범사업 세부 운영 계획 등 협의

(재)중앙자활센터 | 추진경과

##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현황

- 12. 03. 사회적협동조합 남원지역자활센터  
- 이사장 양기운, 조합원 21명
- 12. 13.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 이사장 김효철, 조합원 32명
- 12. 19. 사회적협동조합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 이사장 김경아(센터장 최미혜), 조합원 25명
- 12. 22. 사회적협동조합 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 이사장 김영준(센터장 김선미), 조합원 20명
- 12. 23. 사회적협동조합 봉화지역자활센터  
- 이사장 김휘연, 조합원 9명

‘15년 1월 인가서류 보건복지부 접수

(제)중앙자활센터 |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현황

## 향후 계획

###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컨설팅 지원
- 시범사업 참여기관 적용 별도 지침 개정
- 시범사업 참여기관 합동 교육 진행

###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 분야별 전문지원단 구성
-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역량 진단 KIT 마련
- 공공시장을 포함한 부평지역 시장 환경 분석
- 부평,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조직 진단
- 필요 시 컨설팅 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
- 시범사업 참여기관 적용 별도 지침 개정

(제)중앙자활센터 | 향후 계획

#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둘째날 (1.28)**





## 1. 자활사례관리 실태조사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 2. 자활사례관리 활성화 제언



# 자활사례관리 활성화 제언

2015.1.28.수. 중앙자활센터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황미영

## 미국 노동연계복지프로그램에서의 Key Question

고용이 어려운 참여자의 욕구를 새로운  
반 빈곤정책의 틀에 어떻게 적응시킬 것인가?

→

사례관리모델이 노동연계복지 프로그램 실행  
의 'backbone', '참여자의 접촉지점'으로 선택됨

## 서비스개발적 접근 보다 사례관리 모델을 선택한 이유

- 참여자와 가족의 욕구 모두를 고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줌
- 직업유지를 보다 더 도울 수 있는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음
- 참여자에게 보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열쇠가 될 수 있는 정보수집을 가능케 함
- 다른 접근들은 초기단계에서 참여자들을 돕는데 취약함
- 잦은 가족접촉, 옹호, 직접적 서비스를 위해 헌신하는 시간이 좀더 요구됨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경력있는 직원선발과 사례량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함)

(출처: Ramsey County, Minnesota, 2006)

## 미국TANF 프로그램의 근로참여율 향상을 위한 사례관리의 중요성

### 사례관리자를 동맹자, 협력자로 바라봄

: 낮은 임금, 직업배치 등에는 불만이 있으나 사례관리자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음.  
최선을 다해 필요한 서비스에 의뢰해주고 직업을 이끌어 주는 동맹자(the allied),  
협력자로 바라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참여자가 노동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개별화되고 융통성있는 서비스를 제공

: 특히, 사정과 그것에 기초한 개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창출,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수행하는 것, 참여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원조과업도 수행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학습을 하게 되었음

: 가정방문, 차량지원, 요구되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자원정의(identifying resources)

## TANF 프로그램 사례관리실천 성과의 실천적 함의

### 구직과 직업유지를 돕는 패키지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

: 집중사례관리서비스, 직업심리사정, 학제적 임상컨설팅(임상컨설턴트는 사례관리자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재가육구사정, 보호된 시장에서의 노동, 재정적 옹호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제공

### 사례관리실천에서의 가장 성공적인 관점

: 재활과 사회복지실천의 렌즈로 자신들의 업무를 바라보는 것

-> 이러한 관점은 단지 클라이언트의 한계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는 일련의 서비스와 자원들을 함께 전개하는 힘을 제공해 주었음

### 집중적 사례관리 서비스의 제공

: 참여자와 관련한 모든 사정내용의 조정, 서비스계획의 개발, 서비스 의뢰 및 제공

: 일반적인 사례관리와 집중적 사례관리의 3가지 측면에서의 차이점

- 1) 관계에 대한 초점- 신뢰관계 성립을 강조하는 개별화된 접근의 창출
- 2) 보다 적은 수의 사례량
- 3) 경험이 많은 직원의 활용

## 사례관리자의 과업

- 정기적인 대면접촉(집에서의 가족과의 접촉도 포함)과 더불어 신속한 문제규명과 서비스 계획수립
- 가족옹호(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옹호)
- 직업유지를 가로막는 어떠한 장애도 해결하도록 돕기 위한 과업들에 대해 재량권을 부여함
- 사례관리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부가적 서비스들을 연계하여 배치함(보호된 일자리, 직업심리 및 직업기능사정, 다른 재정적 지원서비스등 법적지지 서비스이용)

## 사례관리자의 업무수행의 어려움

- 사례관리자들이 노동연계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적응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음  
: 과거에 직업관련 사정도구 활용은 해보지 않았음
- : 참여자가 직면한 다층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사정하는 것의 어려움
- : 임상 컨설턴트의 도움을 통해 인지기능이 낮은 참여자, 정신적 또는 심리적 문제를 가진 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한 노동프로그램 개발 및 보다 현실적인 서비스계획을 개발하는 도움을 받음. 또한 이들의 강점과 약점을 정의하는 방법을 학습함
- : 전화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참여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모니터링, 전문화된 서비스에 배치하거나 미래 계획을 원조하거나 개인적 지지를 제공함

### 사례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주요 기술

- 참여자와의 신뢰적, 정서적 작업관계를 수립하는 능력
- 참여자의 문화에 대한 민감성
- 경력-관련 분야 3-5년(대학원 2년을 대체할 수 있음)
- 지역사회 자원활용 능력
-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지식과 참여자에게 적절한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
- 다양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을 조정하는 능력

### 구체적인 직업기술

- 강한 의사결정기술
- 원인에 기초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정능력, 욕구를 스크리닝하여 결정하는 안목과 행동 관찰력
- 고용서비스계획을 개발, 수행하기 위한 임상적 정보를 적용하는 능력
- 참여자가 자신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직접 대면하여 도울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상담기술을 숙지
- 인간행동, 동기부여, 학습과 행동수정에 대한 이론적 지식
- 기록과 대화기술
- 조직화기술

### <미국 TANF 프로그램 성과의 실천적 함의 >

- 1) 고용되기 어려운 참여자에 대한 초기 규명과 사정
- 2) 참여자의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활동의 개발과 활용; 노동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어렵게 하는 개인적 가족적 쟁점들을 가진 참여자의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정신건강, 직업재활 등의 문제)
- 3) 경과적, 단계적 노동기회의 창의적 창출
  - 일할 수 있지만 특별한 적응과 지지 없이는 어려운 참여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노동가능한 역량을 지원하는 단계적 노동기회 프로그램의 개발 전략이 필요함
- 4) 전문화된 프로그램서비스의 의뢰와 파트너십적 연계
  - 예 : 보호된 노동, 독립생활서비스지원, 일상적 정신건강서비스제공)
  - TANF 수행기관과 참여자가 직면한 광범위한 개인적 가족적 위기 요인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과의 연계, 보다 효과적인 파트너십의 창출
  - 참여자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주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핵심목표로 개인적 욕구를 해결하고 동시에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조화된 프로그램들에 연계시킴

## 자활사례관리의 필요성: 기관 측면

### 1) 정당화되고 있는 반빈곤 정책의 억압적, 권위주의적 태도에의 대응: 옹호적, 인간적 전달체계로의 리노베이션

근로 빈곤층의 탈빈곤을 지원하고 사회적 포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규제, 억압적 제재들이 불가피한 필요한 조치들로 정당화되고 있음, 참여자들은 반빈곤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스티그마와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압박, 자립을 강요당하는 것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음

### 2) 자활사업의 특성에 대응: 사회서비스와 사회보장 사이의 경계에 위치

사회보장- 급여업무의 특성( 매우 제한적인 자율성과 융통성만이 허락되는 가운데 일련의 지침과 규칙에 개인의 이슈를 적용하는 것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됨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의 역할(개인과 가족을 포함한 일상의 생활과 관련한 광범위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룸, 사회복지사들의 의사결정은 높은 수준의 전문적 판단과 재량을 기초로 함)

## 자활사례관리의 필요성: 기관 측면

### 소득성취 < 지역사회 주변화를 막는 것

: 참여자 개인과 가족적 환경에 대한 학습이 우선되어야 함

### 고용가능성 제고

: 개별화(직접실천) + 네트워크 실천(지역사회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간접실천

: 참여자의 고용능력이 더욱 취약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정책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은 채 성과목표(취업률, 탈수급률)요구, 과정목표와 관련 과업을 평가하거나 인정하지 않음

## 자활사례관리의 필요성- 참여자 측면

### 공적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스티그마

: 공적서비스를 받게 되는 상황이란 일반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되는 것

### 국가지원의 공적 서비스 의존에 대한 사회적 및 참여자의 태도

- 1) 지역사회로부터의 낙인감- 개인적 관계망에서 비난 받을 만한 실패를 한 사람이라는 자괴감
- 2) 독립과 자립에 대한 상실감, 공포감- 외부 원조망 추구에 대한 두려움
- 3) 공식적 조직과의 관계를 다루는데 대한 지식의 부족과 두려움

## 자활사례관리의 필요성- 참여자 측면

### 자활실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기대

- : 원조관계, 보호관계? - 신뢰적이고 정서적인 작업관계를 원함 (일반적인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관계), 금전이상의 교환을 포함하는 것임, 재정적인 측면만큼이나 정서적이고 실제적 측면의 이익과 불이익을 포함
- : '소통'의 계기- 자신감 회복의 계기를 제공해줌(사람들과 어울리게 해줌, 웃음을 회복함 등)
- : 인큐베이팅, 게이트웨이를 통해 "how to do"를 학습- 자활의욕이 고취됨
- : 옹호자와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조직가에 대한 기대

## 자활사례관리 활성화 방안

- 사례관리를 사례관리자만의 '나 홀로 사례관리'가 아닌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근간으로 적용하여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이해
- 사례관리의 업무를 특정 사업, 또는 단선적 자활경로의 수립등 본질적으로 다루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음, 단계별 과정의 실체로 이해, 사례관리의 제 단계와 단계별 과업을 명료화 하고 사례관리 과정평가지표를 개발(예 전북형 사례관리 단계별 과정)
- 적절한 사례량
- 보다 향상된 실천기술의 확보, 관련 현장경력 최소 2년이상 경험자의 선발과 인력에 대한 재정적 지원
- 광역자활센터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명료화- 미국 현장의 경험으로 부터 다학제 간 임상컨설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례관리자에게 컨설팅 제공등
-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와 지역자활센터간 연계 강화-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례관리 대상자의 선정 및 위탁기관으로서의 위상수립과 전문화



부부



## 〈 2015년 자활지원정책 설명회 참석자 명단 〉

\*기준일 : 2015.01.20.

| 연번 | 시도 | 기관명        | 성별 | 이름  | 메일주소                    |
|----|----|------------|----|-----|-------------------------|
| 1  | 강원 | 강원광역자활센터   | 여  | 조정현 | jjh1961@lycos.co.kr     |
| 2  | 강원 | 강릉지역자활센터   | 남  | 김진욱 | 21simin@hanmail.net     |
| 3  | 강원 | 고성지역자활센터   | 남  | 김성훈 | ggs242@hanmail.net      |
| 4  | 강원 | 삼척지역자활센터   | 남  | 오강석 | kscjahwal@daum.net      |
| 5  | 강원 | 양양지역자활센터   | 남  | 이성린 | sn4336@hanmail.net      |
| 6  | 강원 | 영월지역자활센터   | 여  | 곽현주 | hyunju-f@hanmail.net    |
| 7  | 강원 | 원주지역자활센터   | 남  | 김인식 | isk-97@hanmail.net      |
| 8  | 강원 | 태백지역자활센터   | 여  | 김미숙 | kmm3138@hanmail.net     |
| 9  | 강원 | 태백지역자활센터   | 여  | 양미연 | dywl1018@hanmail.net    |
| 10 | 강원 | 평창지역자활센터   | 남  | 홍석균 | hsk9583@hanmail.net     |
| 11 | 강원 | 화천지역자활센터   | 남  | 성기훈 | sk1219@hanmail.net      |
| 12 | 강원 | 횡성지역자활센터   | 남  | 정낙찬 | 1973chan@hanmail.net    |
| 13 | 강원 | 홍천지역자활센터   | 남  | 김영주 | cckyj@hanmail.net       |
| 14 | 경기 | 광명지역자활센터   | 남  | 김훈석 | ipcgs@naver.com         |
| 15 | 경기 | 구리지역자활센터   | 남  | 선용진 | ogram@hanmail.net       |
| 16 | 경기 | 군포지역자활센터   | 남  | 지재화 | jjhed@hanmail.net       |
| 17 | 경기 | 김포지역자활센터   | 여  | 김희정 | gpjahwal-10@hanmail.net |
| 18 | 경기 | 김포지역자활센터   | 여  | 오연서 | gpjahwal-14@hanmail.net |
| 19 | 경기 | 남양주지역자활센터  | 여  | 최유진 | eugene71@hanmail.net    |
| 20 | 경기 |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 남  | 김영한 | skfro72@hanmail.net     |
| 21 | 경기 |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 여  | 임현정 | sosajahwal@hanmail.net  |
| 22 | 경기 | 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 | 남  | 최준기 | cjksi@hanmail.net       |
| 23 | 경기 | 성남지역자활센터   | 여  | 김정화 | jhm1love@nate.com       |
| 24 | 경기 | 성남지역자활센터   | 남  | 양정룡 | jun99c@naver.com        |

| 연번 | 시도 | 기관명          | 성별 | 이름  | 메일주소                     |
|----|----|--------------|----|-----|--------------------------|
| 25 | 경기 |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 여  | 이규숙 | memberlks@nate.com       |
| 26 | 경기 | 수원지역자활센터     | 여  | 박태화 | dmsdustn7009@hanmail.net |
| 27 | 경기 | 수원지역자활센터     | 여  | 장미선 | nanaid@nate.com          |
| 28 | 경기 | 수원우만지역자활센터   | 남  | 정희주 | hjoo72@hanmail.net       |
| 29 | 경기 | 수원희망지역자활센터   | 남  | 주관호 | holdon@naver.com         |
| 30 | 경기 | 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 남  | 이지완 | leejiwan@hanmail.net     |
| 31 | 경기 |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 남  | 석광재 | tjrrhkdwo777@naver.com   |
| 32 | 경기 |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 여  | 장영은 | babo2479@nate.com        |
| 33 | 경기 | 안양지역자활센터     | 남  | 강영민 | goodp1@hanmail.net       |
| 34 | 경기 | 양주지역자활센터     | 남  | 최흥동 | chd0012@hanmail.net      |
| 35 | 경기 | 용인지역자활센터     | 여  | 김양희 | winbrian@hanmail.net     |
| 36 | 경기 | 의정부지역자활센터    | 남  | 박현용 | jm1976@daum.net          |
| 37 | 경기 | 평택지역자활센터     | 남  | 노현수 | nhs96@hanmail.net        |
| 38 | 경기 | 포천지역자활센터     | 남  | 봉진희 | basileus@hanmail.net     |
| 39 | 경기 | 화성지역자활센터     | 남  | 남윤수 | catnam3@naver.com        |
| 40 | 경기 |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 여  | 안선자 | suns0306@hanmail.net     |
| 41 | 경남 | 경남광역자활센터     | 여  | 이수진 | jamsuni9830@hanmail.net  |
| 42 | 경남 | 거제지역자활센터     | 여  | 박로미 | romispell@hanmail.net    |
| 43 | 경남 | 거창지역자활센터     | 여  | 신말순 | arim9978@hanmail.net     |
| 44 | 경남 | 고성지역자활센터     | 남  | 신진수 | shins9794@hanmail.net    |
| 45 | 경남 | 김해지역자활센터     | 남  | 김호상 | hohosir@hanmail.net      |
| 46 | 경남 | 남해지역자활센터     | 여  | 강현주 | chaehyeon927@nate.com    |
| 47 | 경남 | 밀양지역자활센터     | 여  | 유영순 | yuys77@hanmail.net       |
| 48 | 경남 | 진주지역자활센터     | 여  | 김소형 | palpal-64@hanmail.net    |
| 49 | 경남 | 진해지역자활센터     | 여  | 김기련 | k2kung@nate.com          |
| 50 | 경남 | 창녕지역자활센터     | 남  | 서효민 | cnjahwal2003@hanmail.net |
| 51 | 경남 | 창원지역자활센터     | 여  | 김선영 | eurusu@naver.com         |
| 52 | 경남 | 통영지역자활센터     | 여  | 김경숙 | tyjahwal@hanmail.net     |

| 연번 | 시도 | 기관명        | 성별 | 이름  | 메일주소                     |
|----|----|------------|----|-----|--------------------------|
| 53 | 경남 | 하동지역자활센터   | 여  | 손호연 | shy1567@hanmail.net      |
| 54 | 경남 | 합천지역자활센터   | 남  | 이환호 | lhhgogo11@hanmail.net    |
| 55 | 경북 | 경산지역자활센터   | 여  | 정순화 | miniko0109@nate.com      |
| 56 | 경북 | 경산지역자활센터   | 여  | 최지연 | bori7631@nate.com        |
| 57 | 경북 | 경주지역자활센터   | 여  | 하동주 | alsem@hanmail.net        |
| 58 | 경북 | 고령지역자활센터   | 남  | 이상준 | sang3085@nate.com        |
| 59 | 경북 | 구미지역자활센터   | 여  | 백애자 | talkbaek@hanmail.net     |
| 60 | 경북 | 구미지역자활센터   | 남  | 한상호 | sangho2318@hanmail.net   |
| 61 | 경북 | 군위지역자활센터   | 여  | 은지혜 | kunwikun@yahoo.co.kr     |
| 62 | 경북 | 김천지역자활센터   | 남  | 김해성 | swerhd@nate.com          |
| 63 | 경북 | 문경지역자활센터   | 남  | 이현덕 | leeon3@hanmail.net       |
| 64 | 경북 | 봉화지역자활센터   | 남  | 기세정 | ksjm8@nate.com           |
| 65 | 경북 | 상주지역자활센터   | 여  | 김옥희 | ough1005@hanmail.net     |
| 66 | 경북 | 성주지역자활센터   | 남  | 변상민 | pus24@nate.com           |
| 67 | 경북 | 안동지역자활센터   | 남  | 오경석 | seok366@nate.com         |
| 68 | 경북 | 영덕지역자활센터   | 남  | 강명호 | mhkok@naver.com          |
| 69 | 경북 | 영천지역자활센터   | 남  | 정재관 | sandokevi@hanmail.net    |
| 70 | 경북 | 울진지역자활센터   | 남  | 윤경철 | yuptodate@naver.com      |
| 71 | 경북 | 청도지역자활센터   | 남  | 김태훈 | kth1599@naver.com        |
| 72 | 경북 | 칠곡지역자활센터   | 여  | 홍화정 | hong2ji5@hanmail.net     |
| 73 | 경북 | 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 여  | 김화숙 | scatsong@hanmail.net     |
| 74 | 경북 | 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 남  | 박은호 | somang_you@naver.com     |
| 75 | 경북 | 자활협회 경북지부  | 남  | 손찬혁 | kbjahwal@hanmail.net     |
| 76 | 광주 | 광주광역시자활센터  | 여  | 김현  | pricila@hanmail.net      |
| 77 | 광주 | 광주광역시자활센터  | 여  | 박찬숙 | s-coala@hanmail.net      |
| 78 | 광주 | 광주광역시자활센터  | 남  | 최재영 | hideo007@daum.net        |
| 79 | 광주 | 광산지역자활센터   | 여  | 김경숙 | gonglungfoot@lycos.co.kr |
| 80 | 광주 | 남구지역자활센터   | 남  | 정찬영 | jawhal@hanmail.net       |

| 연번  | 시도 | 기관명          | 성별 | 이름  | 메일주소                     |
|-----|----|--------------|----|-----|--------------------------|
| 81  | 광주 | 남구지역자활센터     | 남  | 신현훈 | kuroto@naver.com         |
| 82  | 광주 | 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 남  | 박철진 | jahwal@hanmail.net       |
| 83  | 광주 |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 남  | 김금현 | bulpae91@hanmail.net     |
| 84  | 광주 | 서구지역자활센터     | 여  | 박혜경 | gwdoum@hanmail.net       |
| 85  | 광주 | 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 여  | 김주선 | wntjsrla@daum.net        |
| 86  | 광주 | 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 여  | 윤영신 | sc-jahal@hanmail.net     |
| 87  | 광주 |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 | 남  | 윤경부 | paentee@korea.kr         |
| 88  | 광주 | 자활협회 광주지부    | 남  | 조형철 | chc003@hanmail.net       |
| 89  | 대구 | 대구광역자활센터     | 여  | 조순진 | zinidream@hanmail.net    |
| 90  | 대구 | 대구남구지역자활센터   | 여  | 김지숙 | ketekim@hanmail.net      |
| 91  | 대구 | 달서지역자활센터     | 여  | 전명진 | audwlsajs@nate.com       |
| 92  | 대구 | 달서지역자활센터     | 여  | 전문희 | 11coramdeo@hanmail.net   |
| 93  | 대구 | 달성지역자활센터     | 남  | 신규태 | sergius79@hanmail.net    |
| 94  | 대구 | 동구지역자활센터     | 남  | 정영달 | tgboss@hanmail.net       |
| 95  | 대구 | 북구지역자활센터     | 남  | 박정우 | goodgood7904@hanmail.net |
| 96  | 대구 | 서구지역자활센터     | 남  | 손수진 | ssj8427@hanmail.net      |
| 97  | 대구 | 대구수성구지역자활센터  | 남  | 권영기 | dolphinkr@naver.com      |
| 98  | 대구 | 중구지역자활센터     | 남  | 김성훈 | sunginwe@hanmail.net     |
| 99  | 대구 | 대구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 | 남  | 김동훈 | happyja@hanmail.net      |
| 100 | 대전 | 자활협회 대전지부    | 여  | 박은숙 | daspa21@hanmail.net      |
| 101 | 대전 | 대덕구지역자활센터    | 여  | 구은미 | 2kem0930@hanmail.net     |
| 102 | 대전 | 동구지역자활센터     | 여  | 김화영 | nalary0708@nate.com      |
| 103 | 대전 |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 여  | 류인화 | rouwha@hanmail.net       |
| 104 | 대전 | 중구지역자활센터     | 남  | 정성재 | jsj012@hanmail.net       |
| 105 | 대전 | 대전유성지역자활센터   | 여  | 정진희 | prettyjjh79@hanmail.net  |
| 106 | 부산 | 강서구지역자활센터    | 남  | 황보성 | bsjch@hanmail.net        |
| 107 | 부산 | 금정지역자활센터     | 여  | 박상영 | psy_green@nate.com       |
| 108 | 부산 | 기장지역자활센터     | 남  | 심재철 | simpaulo@hanmail.net     |

| 연번  | 시도 | 기관명         | 성별 | 이름  | 메일주소                     |
|-----|----|-------------|----|-----|--------------------------|
| 109 | 부산 | 남구지역자활센터    | 남  | 최재영 | purplekukhwa@hanmail.net |
| 110 | 부산 | 동구지역자활센터    | 남  | 구창우 | suma6521@hanmail.net     |
| 111 | 부산 | 부산진지역자활센터   | 여  | 조상미 | chosang101@hanmail.net   |
| 112 | 부산 | 북구지역자활센터    | 여  | 전선옥 | julychun@hanmail.net     |
| 113 | 부산 | 북구지역자활센터    | 여  | 박영애 | pdana@hanmail.net        |
| 114 | 부산 |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 | 남  | 박광언 | uni7713@naver.com        |
| 115 | 부산 | 사하지역자활센터    | 남  | 서정배 | seo8777@nate.com         |
| 116 | 부산 | 사하두송지역자활센터  | 여  | 강혜진 | freejiny@naver.com       |
| 117 | 부산 | 서구지역자활센터    | 여  | 백영순 | paecksam@hanmail.net     |
| 118 | 부산 | 수영지역자활센터    | 남  | 박종범 | invitations@hanmail.net  |
| 119 | 부산 | 연제지역자활센터    | 여  | 유현정 | yhj2727@nate.com         |
| 120 | 부산 | 부산영도지역자활센터  | 여  | 이승혜 | candy0224@nate.com       |
| 121 | 부산 | 해운대지역자활센터   | 여  | 이선주 | ju713@hanmail.net        |
| 122 | 서울 | 자활협회 서울지부   | 남  | 조진우 | shadow14th@hanmail.net   |
| 123 | 서울 | 서울광역자활센터    | 여  | 이선화 | hama0404@hanmail.net     |
| 124 | 서울 | 강남지역자활센터    | 여  | 김경숙 | kogic54@korea.com        |
| 125 | 서울 | 강북지역자활센터    | 남  | 김종현 | gbjahwal@naver.com       |
| 126 | 서울 | 강북지역자활센터    | 남  | 오승현 | gbjahwal@naver.com       |
| 127 | 서울 | 강북지역자활센터    | 남  | 황상섭 | r2023@dreamwiz.com       |
| 128 | 서울 | 강서지역자활센터    | 여  | 권민정 | minjung3187@hanmail.net  |
| 129 | 서울 | 강서지역자활센터    | 남  | 조성남 | chogoon3@hanmail.net     |
| 130 | 서울 | 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 남  | 김정민 | unbalance18@naver.com    |
| 131 | 서울 | 강서방화지역자활센터  | 남  | 조병구 | aiyes@hanmail.net        |
| 132 | 서울 | 관악봉천지역자활센터  | 남  | 김봉준 | junis5@hanmail.net       |
| 133 | 서울 | 구로지역자활센터    | 여  | 김명숙 | ocenb@naver.com          |
| 134 | 서울 |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 여  | 허지영 | kurolife@hanmail.net     |
| 135 | 서울 | 금천지역자활센터    | 남  | 이연재 | 76elf00@hanmail.net      |
| 136 | 서울 |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 남  | 박인수 | happyeven@hanmail.net    |

| 연번  | 시도 | 기관명        | 성별 | 이름  | 메일주소                      |
|-----|----|------------|----|-----|---------------------------|
| 137 | 서울 | 동대문지역자활센터  | 남  | 최원호 | bigdadoo17@naver.com      |
| 138 | 서울 | 동대문지역자활센터  | 남  | 양지훈 | newpassword@naver.com     |
| 139 | 서울 | 동작지역자활센터   | 여  | 김소희 | ehdwk7708@hanmail.net     |
| 140 | 서울 | 마포지역자활센터   | 남  | 김규태 | ktangel75@naver.com       |
| 141 | 서울 | 마포지역자활센터   | 여  | 김나현 | violetsky1128@hanmail.net |
| 142 | 서울 | 마포지역자활센터   | 여  | 이상미 | lsm900405@hanmail.net     |
| 143 | 서울 | 서대문지역자활센터  | 여  | 김병의 | green@seojahwal.or.kr     |
| 144 | 서울 | 서대문지역자활센터  | 남  | 백선호 | 1234sunho@hanmail.net     |
| 145 | 서울 | 성동지역자활센터   | 남  | 김태풍 | sexymh2@naver.com         |
| 146 | 서울 | 성동지역자활센터   | 여  | 모으리 | tjnio@nate.com            |
| 147 | 서울 | 송파지역자활센터   | 남  | 양우식 | spjahwal@hanmail.net      |
| 148 | 서울 | 송파지역자활센터   | 여  | 박정자 | pjj4839@hanmail.net       |
| 149 | 서울 | 양천지역자활센터   | 여  | 하소영 | snobbery@naver.com        |
| 150 | 서울 | 양천지역자활센터   | 여  | 마정길 | mjway@naver.com           |
| 151 | 서울 | 영등포지역자활센터  | 여  | 이진희 | dwlsqml0410@hanmail.net   |
| 152 | 서울 | 서울용산지역자활센터 | 여  | 양경순 | ysjahwal@gmail.com        |
| 153 | 서울 | 종로지역자활센터   | 남  | 유승준 | yu751020@naver.com        |
| 154 | 서울 | 종로지역자활센터   | 여  | 이은정 | hue1125@nate.com          |
| 155 | 서울 | 중구지역자활센터   | 여  | 김은지 | happywork21@naver.com     |
| 156 | 서울 |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 남  | 조도현 | whoopee9@hanmail.net      |
| 157 | 세종 | 세종지역자활센터   | 여  | 유나연 | toitoki@nate.com          |
| 158 | 울산 | 동구지역자활센터   | 여  | 김미정 | mj5867@hanmail.net        |
| 159 | 울산 | 동구지역자활센터   | 여  | 최시정 | wjd3570@hanmail.net       |
| 160 | 울산 | 울산북구지역자활센터 | 여  | 이광미 | lkm1364@hanmail.net       |
| 161 | 울산 | 울산북구지역자활센터 | 남  | 허동범 | quinlove@nate.com         |
| 162 | 울산 | 울산중구지역자활센터 | 여  | 김정남 | kjn0333@hanmail.net       |
| 163 | 울산 | 울산울주지역자활센터 | 남  | 임대완 | sad100@hanmail.net        |
| 164 | 인천 | 자활협회 인천지부  | 남  | 김승진 | injahwal@hanmail.net      |

| 연번  | 시도 | 기관명         | 성별 | 이름  | 메일주소                     |
|-----|----|-------------|----|-----|--------------------------|
| 165 | 인천 | 인천광역자활센터    | 여  | 조부현 | baeboo@hanmail.net       |
| 166 | 인천 | 강화지역자활센터    | 남  | 이상진 | lsang640@hanmail.net     |
| 167 | 인천 | 계양지역자활센터    | 남  | 이현진 | nuribang@hanmail.net     |
| 168 | 인천 | 남구지역자활센터    | 남  | 신인권 | human-right@hanmail.net  |
| 169 | 인천 | 남구미추홀지역자활센터 | 남  | 윤상득 | ysd7194@naver.com        |
| 170 | 인천 | 남동구지역자활센터   | 여  | 지승희 | nd-jahwal@hanmail.net    |
| 171 | 인천 | 동구지역자활센터    | 여  | 최혜선 | rasia72@hanmail.net      |
| 172 | 인천 | 부평지역자활센터    | 여  | 박은영 | bosi108@hanmail.net      |
| 173 | 인천 | 연수지역자활센터    | 여  | 유인호 | yonsujh@hanmail.net      |
| 174 | 전남 | 전남광역자활센터    | 여  | 이현정 | ellisslh@naver.com       |
| 175 | 전남 | 광양지역자활센터    | 남  | 이창희 | kyjahwal-1@hanmail.net   |
| 176 | 전남 | 곡성지역자활센터    | 여  | 이한나 | hanna-abcdef@hanmail.net |
| 177 | 전남 | 나주지역자활센터    | 남  | 사정환 | jhfour@naver.com         |
| 178 | 전남 | 목포지역자활센터    | 여  | 김문영 | kmy2451@hanmail.net      |
| 179 | 전남 | 목포지역자활센터    | 여  | 오향  | hyangoh-p@hanmail.net    |
| 180 | 전남 | 무안지역자활센터    | 남  | 김훈  | km-64@daum.net           |
| 181 | 전남 | 보성지역자활센터    | 남  | 김성환 | hwan7015@hanmail.net     |
| 182 | 전남 | 여수시민지역자활센터  | 여  | 이승희 | leesh2038@hanmail.net    |
| 183 | 전남 | 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 여  | 박정란 | pjr1124@hanmail.net      |
| 184 | 전남 | 장성지역자활센터    | 여  | 강정옥 | hohojoi@hanmail.net      |
| 185 | 전남 | 장흥지역자활센터    | 남  | 백종팔 | baek6701@hanmail.net     |
| 186 | 전남 | 장흥지역자활센터    | 남  | 이종전 | rostvan@hanmail.net      |
| 187 | 전남 | 진도지역자활센터    | 남  | 이광식 | zzillim@hanmail.net      |
| 188 | 전남 | 함평지역자활센터    | 여  | 김진희 | rosa8280@naver.com       |
| 189 | 전남 | 함평지역자활센터    | 남  | 오철수 | su9577@hanmail.net       |
| 190 | 전남 | 해남지역자활센터    | 남  | 박종국 | hyo96sun@naver.com       |
| 191 | 전남 | 화순지역자활센터    | 남  | 김상혁 | mirbass@naver.com        |
| 192 | 전남 | 고흥지역자활센터    | 남  | 박상욱 | windy67@daum.net         |

| 연번  | 시도 | 기관명         | 성별 | 이름  | 메일주소                   |
|-----|----|-------------|----|-----|------------------------|
| 193 | 전북 | 자활협회 전북지부   | 여  | 성명희 | jbjahwal@hanmail.net   |
| 194 | 전북 | 고창지역자활센터    | 여  | 김지현 | 0176268013@hanmail.net |
| 195 | 전북 | 고창지역자활센터    | 여  | 노 숙 | no-1157@hanmail.net    |
| 196 | 전북 | 고창지역자활센터    | 남  | 장우영 | posses2727@hanmail.net |
| 197 | 전북 |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 남  | 김정환 | kjhmailbox@hanmail.net |
| 198 | 전북 | 김제지역자활센터    | 남  | 김성은 | in1624@hanmail.net     |
| 199 | 전북 | 무주지역자활센터    | 남  | 김민수 | snjb4@hanmail.net      |
| 200 | 전북 | 부안지역자활센터    | 남  | 장헌진 | shalom-52@hanmail.net  |
| 201 | 전북 | 완주지역자활센터    | 남  | 이병희 | bigtree34@hanmail.net  |
| 202 | 전북 | 완주지역자활센터    | 여  | 한미숙 | hms770@hanmail.net     |
| 203 | 전북 | 완주지역자활센터    | 남  | 이정득 | dwe-21@hanmail.net     |
| 204 | 전북 | 완주지역자활센터    | 남  | 김진왕 | wanjuh@hanmail.net     |
| 205 | 전북 |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 여  | 오주영 | kkk2285@hanmail.net    |
| 206 | 전북 | 임실지역자활센터    | 남  | 김종수 | isjahwal@hanmail.net   |
| 207 | 전북 |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 여  | 김정은 | iii22@hanmail.net      |
| 208 | 전북 | 전주생명지역자활센터  | 남  | 조용희 | life-spa@hanmail.net   |
| 209 | 전북 | 정읍지역자활센터    | 남  | 강건양 | kgv6551423@hanmail.net |
| 210 | 전북 | 진안지역자활센터    | 여  | 조수현 | su-179@hanmail.net     |
| 211 | 전북 | 진안지역자활센터    | 여  | 유정  | yu-jeoung@hanmail.net  |
| 212 | 제주 |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 남  | 김성복 | ksb7309421@hanmail.net |
| 213 | 제주 | 제주수놓음지역자활센터 | 남  | 차용석 | jejujahwal@nate.com    |
| 214 | 충남 | 충남광역자활센터    | 남  | 이현수 | love100year@empal.com  |
| 215 | 충남 | 금산지역자활센터    | 남  | 손종균 | sonjk2@hanmail.net     |
| 216 | 충남 | 논산지역자활센터    | 남  | 김병기 | weapontoo@naver.com    |
| 217 | 충남 | 부여지역자활센터    | 여  | 김용옥 | k7701k@hanmail.net     |
| 218 | 충남 | 아산지역자활센터    | 여  | 이은영 | nawooeun@hanmail.net   |
| 219 | 충남 | 아산지역자활센터    | 여  | 최현아 | choia@hanmail.net      |
| 220 | 충남 | 천안지역자활센터    | 여  | 김희정 | camel_72@nate.com      |

| 연번  | 시도 | 기관명        | 성별 | 이름  | 메일주소                    |
|-----|----|------------|----|-----|-------------------------|
| 221 | 충남 | 태안지역자활센터   | 남  | 장재범 | jb1476@hanmail.net      |
| 222 | 충남 | 홍성지역자활센터   | 남  | 권혁찬 | sun-mom@hanmail.net     |
| 223 | 충북 | 충북광역자활센터   | 여  | 김동숙 | stone2sta@naver.com     |
| 224 | 충북 | 괴산지역자활센터   | 여  | 장산해 | mtse72@hanmail.net      |
| 225 | 충북 | 단양지역자활센터   | 여  | 최은희 | cenhi@hanmail.net       |
| 226 | 충북 | 보은지역자활센터   | 여  | 배진숙 | pae114@hanmail.net      |
| 227 | 충북 | 영동지역자활센터   | 남  | 이정열 | jylee1025@nate.com      |
| 228 | 충북 | 옥천지역자활센터   | 여  | 유수진 | candy77317@hanmail.net  |
| 229 | 충북 |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 | 남  | 신준범 | love-song71@hanmail.net |
| 230 | 충북 | 제천지역자활센터   | 여  | 장영주 | 0-jou@hanmail.net       |
| 231 | 충북 | 진천지역자활센터   | 남  | 민병준 | soccerman14@nate.com    |
| 232 | 충북 | 청주지역자활센터   | 여  | 이미숙 | leeddol@naver.com       |
| 233 | 충북 | 충주지역자활센터   | 남  | 음재석 | ejs1437@naver.com       |



#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